법관 전보인사 꾸기 개편 방안

2024. 10. 17.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목 차〉--

l. 검토 배경 ···································
1.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관 구성의 변화1
2. 재판지연 현상의 심화 및 관련 예규의 개정1
Ⅱ. 법관 전보인사의 개선 방향 검토 ···································
1. 법관 인사제도 및 인사패턴의 변천3
가. 법관 인사제도의 변천 과정3
나. 법관 인사패턴의 변천 과정5
다. 평가 및 시시점
2. 현행 법관 전보인사의 개요 및 특징10
가. 현행 인사기준 및 인사패턴10
나. 현행 법관 전보인사의 특징12
3. 현행 법관 전보인사의 문제점 진단13
4. 법관 전보인사의 개선 방향 검토15
가. 법관 부동성 원칙의 구현 가능성15
나.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장기화20
Ⅲ. 법관 전보인사의 주기 개편 및 유연화 방안 검토22
1. 개요22
2.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의 전보주기 장기화 현황22
가. 개요
나. 전보주기 장기화 현황22
1) 근무기간을 초과한 잔류 허용22
2) 장기근무제도23
3) 가사·소년시건 전문법관제도24
4) 의료·건설시건 전문법관제도24
다.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의 한계25
1) 잔류희망 허용의 경우25

2) 장기근무법관제도, 전문법관제도의 경우25
3) 장기화된 사 무분 담기간과의 불일치 문제 ···································
3. [방안 ①] 권역 내 순환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27
가. 개요
나. [방안 ①-1] 지법부장의 서울권 내 순환근무 축소 또는 폐지 방안
1) 개요
2) 검토방안29
3) 시행을 위한 고려 사항34
다. [방안 ①-2] 초임 지법판사의 순환근무 폐지 방안
1) 개요
2) 검토방안39
라. [방안 ①-3] 수도권 초임 지법판사의 지방권 본·지원 교류 등 폐지 방안 ··································43
1) 수도권 초임 법관의 본·지원 교류 폐지 방안 ···································
2) 수도권 초임 법관의 본원·가정 교류 폐지 방안 ···································
마. [방안 ①-4] 지법판사의 서울권 내 순환근무 축소 방안
1) 개요47
1) 개요
바. [방안 ①-5] 지역계 속근무 법관의 순환근무 축소 방안 ···································
1) 개요
2) 검토방안56
4. [방안 ②] 법관 전보인사를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과 연계하는 방안59
가. 개요59
나. 법관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60
다. 검토방안
1) [②-1안]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 권역 내 전보인사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60
2) [②-2안]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 권역 외 전보인사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3) 검토의견 ▷ 소극
5. [방안 ③] 권역별 근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67
가. [방안 ③-1] 지법부장의 서울권 근무기간을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67
나. [방안 ③-2] 지법부장의 서울권 근무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68
Ⅳ.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을 위한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IV.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을 위한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71 1. 검토 배경 ·········71

나.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72
2.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 개편 필요성73
가. 현행 인사패턴73
나.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에 관한 문제의식75
1) 법관경력 요건의 강화 필요성75
2) 부장 보임 시기의 적정성76
3) 원활한 인사 운영의 문제79
3.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 개편 방안80
가. 개요
나. [방안 ④-1] 부장 보임과 무관하게 단일한 인사패턴을 적용하는 방안
1) 개요
2) [방안 ④-1-@] 1차 지방권 근무 후 최소 4년의 수도권 근무를 보장하는 인사패턴
3) [방안 ④-1-ⓑ] 수도권 초임과 지방권 초임이 교차하여 근무하는 인사패턴 ···································
다. [방안 ④-2] 부장 보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1) 개요
2) [방안 ④-2-@] 부장 보임 시기를 일률적으로 지연하는 방안
3) [방안 ④-2-b) 부장 보임에 일정한 법관경력을 요구하는 방안 ···································
라. [방안 ④-3] 지방권 근무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
마. [방안 ④-4] 수도권 최소 2년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
1) 개요97
2) [방안 ④-4-⑧] 10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3) [방안 ④-4-ⓑ] 11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99
바. [방안 ④-5] 부장 보임 시 전보인사를 유연하게 운용 하는 방안101
1) 개요
2) 종래 부장 보임 시 전보인사 기준101
3) [방안 ④-5-@]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경인권 전보를 허용하는 방안102
4) [방안 ④-5-⑥]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전보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103
V.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106
[별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안)113



I. 검토 배경

- 1.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관 구성의 변화
 - 법원조직법의 개정(2011. 7. 18.)에 따른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2013. 1. 1.)
 -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u>2018년부터 5년</u>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음
 - 최근 국회에서 법관임용을 위한 <u>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u>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4. 10 16. 공포·시행됨
 - 법관 사회의 고령화 가속
 - 신임 법관의 평균연령 30.4세(2013년)에서 35.8세(2023년)로 5.4세↑
 - 전체 법관의 평균연령 39.9세(2013년)에서 44.6세(2023년)로 4.7세↑
 - 법관의 잦은 전보인사와 계속되는 순환근무에 대한 고충 ⇒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 원인이자 우수한 법조경력자의 유치에 장애요소로 작용
 - 종래의 인사패턴(전보주기, 순환근무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 요하다는 지적
- 2. 재판지연 현상의 심화 및 관련 예규의 개정
 - 최근 사건 평균처리기간의 장기화
 - 민사본안 합의사건 236.5일(2012년)에서 420.1일(2022년)로 183.6일↑
 - 민사본안 단독사건 157.6일(2012년)에서 229.3일(2022년)로 71.7일↑
 - 형사공판 합의사건(불구속) 104.1일(2012년)에서 223.7일(2022년)로 119.6일↑
 - 형사공판 단독사건(불구속) 92.9일(2012년)에서 182.5일(2022년)로 89.6일↑
 - 재판지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잦은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변경 문제가 지적



됨 ⇒ 2024. 2. 1.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이하 '사무분담 예규'라고 함) 개정으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추진

● **구 예규**(2024. 2. 1. 재판예규 제1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 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판장인 법관: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 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개정된 현행 예규**(2024. 2. 1. 개정, 재판예규 제1870호)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 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판장인 법관: 3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2년(다만, 해당 법관을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 2호에 우선하여 적용하다)
-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잦은 전보인사의 개선을 통해 사무분담 장기화 추세를 뒷받침할 필요성 증 대



Ⅱ. 법관 전보인사의 개선 방향 검토

- 1. 법관 인사제도 및 인사패턴의 변천
 - 가. 법관 인사제도의 변천 과정
 - 경향교류의 실시 < 1960년대
 - 1960년대 초중반에는 법관의 수가 200~300여명에 불과
 □ 일부 지역 간 전보가
 있었으나 수도권과 지방을 순환근무하는 형식의 경향교류가 실시되지는 않았음
 - 다만, 지방 초임은 지방 내 지원, 본원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이는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임), 수도권 초임도 부장 승진 시 지방으로 잠시 전보된 사례가 있었음
 - 1960년대 후반에 법관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 간의 이동이 없어 법관들 사이에 지방근무로 인한 불만이 커짐 ➡ 1969년경부터 경향교류 실시
 - 인사기준(서열)은 호봉순, 임용일자순 등에 의하되, 동기간에는 연령순

■ 경향교류의 확대 실시 < 1980년대

- 1980년대에 들어 법관의 수가 600명대로 증가하면서 경향교류가 확대 실시되었음
 - 1979. 11. 동기 내 인사기준을 연령순이 아닌 임관성적순으로 변경
- 1982년부터 고법부장 승진 시 지방권으로 전보되었음

■ 인사기준의 수립 및 변경 < 2000년대

- 2003년에 기존 서열제도 폐지하고 임관 후 10년 이내는 임관성적순, 10년 이후 에는 근무평정 순으로 인사기준 수립
- <u>2005년에 임관 10년 이후 근무평정에 의한 인사기준 폐지</u>하고 본인의 희망, 개 인사정, 연고지, 법관 사이의 형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변경



■ 인사패턴의 유연화 < 2012년 정기인사

● 인사패턴 조정방안

- 큰 틀에서 종전 인사패턴 유지하면서 유연화 추구
-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다른 권역에 판사 소요(공석)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 보기준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
- 판사 인원의 권역별 불균형 문제, 특히 지방의 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으로 시행된 것임

■ 지역법관제도의 시행 및 폐지 < 2004년~2014년

- 2004년부터 지법부장 이하 법관 중 지방권 특정 고등법원 관할 내 법원에서만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법관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직 기간 중 해당 권역 내 법원으로만 전보되어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지역법관제도 시행
 - 그 전에도 이른바 "향판제도"가 있었으나 해당 법관의 지위가 공식화제도화 된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인사 운용상 필요에 따라 전보 대상이 될 수 있었 다는 한계가 있었음
- 2014년 장기근무 지역법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면서(소위 "황제노역" 논란 등) 지역법관제도의 폐지가 결정되고, 2015년부터 지방 특정 권역계속근무 법관에 대한 새로운 인사기준 시행

■ 장기근무제도의 시행 < 2021년 정기인사

- 법관의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2021년 정기인사부터 전국 43개 법원에서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
- 장기근무 기간은 서울권 법원 5년, 경인권 법원 7년, 지방권 법원 7년+3년
 - 서울권·경인권 법원 장기근무기간 중 지방권 근무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장기

근무 기간 내에는 경향교류를 유예함

나. 법관 인사패턴의 변천 과정

■ 지법부장의 인사패턴

- **지법부장이 2차 경향교류를 마칠 때**까지의 인사패턴
 - ▷ 2013년¹) 1차 서울권 근무기간 연장

서울권 6년 → 7년 지방권 1년 경인권 2년 경인권 3년 ▶ 2014년 1차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²⁾ 지방권 경인권 2년 서울권 7년 경인권 3년 1년 → 2년 ▶ 2017년 2차 경향교류 실시³) 지방권 2년 경인권 2년 서울권 7년 지방권 2년 경인권 3년 ▷ 2020년 1차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⁴) 경인권 2년 서울권 7년 지방권 2년 경인권 3년 2년 → 3년 ▷ 2023년 1차 경인권 근무기간 연장⁵⁾ 경인권 2년 → 2~3년 지방권 3년 서울권 7년 지방권 2년 경인권 3년

- 2013년 서울권 근무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시된 것임

¹⁾ 변경된 인사패턴에 따라 인사가 실시된 정기인사 연도를 기재하였으나, 해당 연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수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실시된 경우도 있음(이하 같음)

^{2) 2014}년 이전에도 지방권에서 1년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4년 정기인사부터(주로 27기부터) 선발 성 보직 외에는 지방권 2년 근무 원칙 정립

^{3) 2017}년 이전에는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법부장은 경인권으로 전보되어 3년 단위로 법원을 이동하였음

⁴⁾ 주로 32기부터 실시

⁵⁾ 종래부터 경인권 근무기간은 서울권 공석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었으나, 2023년 정기인사부터(주로 32기부터) 경인권 실근무 2년인 지법부장은 경인권 전원 잔류로 결정

- ▷ <u>서울권 근무 6년은 소속 법원 최소 근무 2년 인사패턴과 배치</u> ▷ 시내지법 2년 → 중앙 3년 <math> → 시내지법 1년 → 경인 전출 불가피
- ▷ 서울권 공석 부족 현상 예상되나, 향후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 및 2차 경향교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고려
 - 서울권 내 순환근무
 - 서울증앙·행정·회생(3년)과 서울가정·시내지법(2년) 사이에서 순화근무
 - 2013년 이후 ① <u>가정·시내(2년) + 중앙·행정·회생(3년) + 가정·시내(2년)</u>, ② 가정·시내(4년) + 중앙·행정·회생(3년), ③ 중앙·행정·회생(3년) + 가정·시내(2년)
 년) + 가정·시내(2년) 등의 형태로 순환근무
 - 2차 경향교류 복귀 후 경인권 근무기간 및 서울권 내 순환근무 등은 사례가 많 지 않으므로 법관수급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하게 운용

■ 지법판사의 인사패턴

● 서울궈 초임

▶ 1994년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

지방권 서울권 4년 서울권 ▶ 2005년 경인권 근무 실시 서울권 4년 지방권 3년 경인권 2년 서울권 Þ ▶ 2014년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 지방권 3년 → 4년 서울권 4년 경인권 2년 서울권 ▶ 2020년 경인권 근무기간 연장⁶⁾ 경인권 서울권 4년 지방권 4년 서울권 2년 → 2~3년

⁶⁾ 서울권 초임의 경인권 근무기간은 공석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2020년부터 가급적 3년 원칙으로 운용(경인권 부족)

● 경인권 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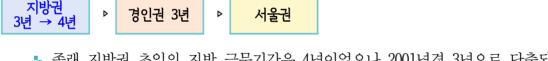
▶ 1994년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



■ 2017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권 근무를 마친 수도권 초임 법관에게 경인권 근무 없이 서울권 직접 진입을 허용한 바 있음(경인권 과원)

● 지방권 초임

▶ 2011년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



■ 종래 지방권 초임의 지방 근무기간은 4년이었으나 2001년경 3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1년부터 다시 4년으로 연장 시행(2013년에 전원에게 적용)

● 권역 내 순환근무

- 2013년 **지방권 초임의 본・지원 교류** 허용(본원 2년 ↔ 지원 2년)
- 2016년 **지방권 시외지원**⁷⁾ 초임의 의무적 본·지원 교류</mark> 실시(지원 2년 → 본원 2년)
- 2016년 <u>수도권 초임의 본·지원 교류</u> 실시

⁷⁾ 대구 서부, 부산 동부·서부, 마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권 지원



■ 지방 특정 권역 계속근무 법관의 인사패턴

[고등법원 권역 내 순환근무]

본원 3년 ▷ 지원 2년 ▷ <mark>본원 3년</mark> ▷ 지원 2년

[고등법원 권역 외 순환근무]

본 권역 7년 ▷ 타 권역 2년 ▷ 본 권역 복귀

- 2014년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되고 2015년 지방 특정 권역 계속근무 법관(이하 '지역계속근무법관' 이라고 함)에 대한 새로운 인사기준 시행 ☞ 동일 고등법원 권역 근무기간이 7년에 이르거나 지법판사에서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타 고등법원 권역으로 순환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종래 지역법관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도 본・지원 전보는 실시되었으나 동일 고등법 원 권역 내에서 계속 근무 가능하였음
 - 최근에는 부장 보임 시 권역 외 전보 원칙만 적용하고 <u>7년 근무 후 전보 원칙은</u> 유보 추세

다. 평가 및 시사점

- 법관 전보인사 개편을 위해서는 당초 경향교류가 실시된 배경과 최근 지역 법관제도가 폐지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여야 함
 - **법관의 경향 교류**는 법원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u>법관들의 지방근무 장기화에</u> 따른 문제제기, 즉 형평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음
 - **법관 사이의 형평**은 <u>법관의 지위와 독립성에 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법관 사</u>회에 뿌리를 내린 기본적인 인사 원칙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편으로 법관 사이의 형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형평을 양보할 만한 <u>다른 공익적 요청과의 면밀한 비교형량과 법관 사회의 수</u> 용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된 경위**를 고려할 때 법관의 전보인사는 **국민의 사**



법신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향교류의 실시 배경에만 주목한다면 법관의 전보인사 제도는 주로 법관들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역법관제도의 폐지로 장기근무 지역법관이 권역 외 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법관 전보인사는 국민의 사법신 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함 ☞ 전보인사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법원 외부의 영향까지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관 인사패턴의 변천은 결국 지방권 부족, 서울권 과원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그때그때 대처해온 과정이라 볼 수 있음

- 과거에는 고법부장 미보임 시 사직 현상 등으로 인하여 서울권 공석이 확보되는 요인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법부장 폐지 및 평생법관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이러한 요인이 거의 사라짐
- 현재와 같은 순환근무 패턴이 유지되는 한 <u>법관의 지방권(또는 경인권) 근무기</u> 간은 갈수록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었다고 가정하면 권역별 법원 규모에 비추어 법관은 <u>총 근무기간의 40% 이상을 지방에서</u> 근무해야 함(현행 인사패턴 상으로는 30% 미만 근무)
- 지방권 법관 인력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여 경향교류 법관의
 지방권 근무기간 장기화를 최대한 늦추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사운용의 관건임

■ 권역 내 전보주기 장기화는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 종래에는 법원별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u>지법판사의 경우 지</u> 방권 4년(본・지원 교류 제외), 경인권 3년, 지법부장의 경우 지방권 3년, 경인 권 3년을 동일 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전보주기 장기화가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 전보주기 장기화는 점차 많은 법관들이 경험하고 있고 아직 큰 부작용이 발견 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서울권 등에서 **추가적으로 순환근무 축소를 실시하더라**



도 수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음

- 2. 현행 법관 전보인사의 개요 및 특징
 - 가. 현행 인사기준 및 인사패턴
 - 현행 인사기준
 - 『2024년 정기인사 인사희망원 등 신청 안내』를 통해 공지함
 - 개요

법관인사는 <u>법관들 사이의 형평과 인사의 공정성 및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그동안 형성되어 온 인사패턴 및 관행</u>을 기초로 하면서, 그 안에서 <u>개별 법관들의 구체적인 사정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u>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희망 경합 시 인사기준
- 배치 시 희망이 경합하는 경우 종래 아래와 같은 인사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① 임관 후 10년 이내에는 임관성적에 의한 인사기준을 유지하되 인사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형평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지방권 비선호 임지 근무 경력자의 경우 개인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임지를 배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임관 10년 후 인사에서 임지를 배려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합니다. ② 임관 10년 후부터는 적재적소의 배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인사를 하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각 인사 단계별로 희망, 개인사정, 주소지, 연고지, 나이 등과 함께 종전 근무지 등을 고려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합니다.

■ 현행 전보주기

● 지법부장

지방권 3년 ▷ 경인권 2~3년 ▷ <mark>서울권 7년 (또는 경인권 전입 후 11년) ▷ 지방권 2년 ▷ 경인권 3년</mark>

- 서울권 7년 = 중앙·행정·회생 3년 + 가정·시내 2년 + 가정·시내 2년 등
- 경인권 11년은 법원별 2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법관수급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하게 운용
- 지법판사



[서울권 초임]

- 서울권 4~8년 = 중앙·행정 2년(회생은 3년) + 가정·시내 2년 + 중앙·행정 2년 등
- 지방권 4년 = 지원 2년 + 본원 2년 등(지방권 초임 및 중・소규모 지원 근무 수도 권 초임)
- 다만 위 인사패턴은 즉시임용 법관의 경우로, <u>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경우는</u> 법조경력에 따라 부장 보임 직전 수도권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지역계속근무법관의 인사패턴

[고등법원 권역 내 순화근무]

 본원 3년
 ▷
 지원 2년
 ▷
 본원 3년
 ▷
 지원 2년

 [고등법원 권역 외 순환근무]

본 권역 7년 ▷ 타 권역 2년 ▷ 본 권역 복귀

- 동일 고등법원 권역 근무기간이 7년에 이르거나 지법판사에서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 타 고등법원 권역으로 순환근무하는 것이 원칙
- 최근에는 부장 보임 시 권역 외 전보 원칙만 적용하고 7년 근무 후 전보 원칙은
 유보 추세 ⇒ 지법판사는 동일 권역 내 10년 이상 근무 허용하고, 지법부장은 보임
 후 동일 권역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권역 외 전보 실시
- 지역계속근무법관은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경향교류법관이라 하더라도 지역계속근 무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패턴에 따라 전보를 허용할 수 있음



나. 현행 법관 전보인사의 특징

■ 현행 법관 전보인사는 일정한 패턴과 주기로 권역별 전보하되 가급적 그동 안의 인사경로 등을 감안한 형평에 기초하여 다음 근무지를 정함으로써 비 교적 단기간 내에 법관들 사이 근무 여건의 형평을 도모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형평인사의 원칙

- 선호권역(수도권)과 비선호권역(지방권) 사이의 순환근무
 - 선호권역 근무에 대하여 희망하는 모든 법관에게 가급적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비선호권역 근무에 대하여 일부 법관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의미
- 전보인사 시 그동안의 인사경로 등에 기초하여 근무지가 결정됨
 - 지방권 내 비선호지원 근무 후에는 다음 경인권 근무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배 려
 - 특히 초임부장의 지방권 근무지는 종전 지방권 및 경인권 근무지, 전문법원 근무 유무, 해외연수 유무 등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함
- 형평인사의 원칙을 추구함으로써 전보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인사결과 수용도를 중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는 현행 법관 전보인사 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추구해온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일률적인 형평을 추구함으로써 개**별 법관의 생애주기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있음

■ 통일적 인사패턴의 수립

- 일정한 패턴(경향교류법관의 경우 서울→지방→경인→서울, 지역계속근무법관 의 경우 본원→지원→본원 등)과 주기를 정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수년 후의 근무 권역을 예상할 수 있어 가족계획 등에 반영 가능

■ 인사희망의 반영

- 기존의 인사패턴을 기초로 하되 개별 법관들의 구체적인 사정들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보완함
 - 권역별, 법원별, 직위별 공석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u>통상적인 근무기간과</u> 일치하지 않는 잔류 및 전출, 인사패턴을 거스르는 역진(경인→지방, 서울→경 인) 가능
- 법관 생활의 안정성 및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지방권 및 경인권 근무가 연장되는 경우 서울권 쏠림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 다만, **기존의 인사패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법관 인력수급 사정에 의** 존하여야 하므로 매년 허용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 있음

■ 다양한 법원에서 여러 업무를 경험한 법관을 양성

- 비교적 규모 있는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하여 가정, 행정, 회생, 특허 등의 전문법원에도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가급적 많은 법관이 다양 한 업무를 경험하도록 함
- 다양한 법원에서 여러 업무를 경험한 법관을 양성하여 **법관 개개인의 재판역량 을 키운다는 과접**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일부 법관이 법원 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논란 가능성 등을 줄이는 측면도 있음
- 다만, 법원 안팎으로 법관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법관이 다양
 한 업무를 경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약화되어 가는 측면이 있음

3. 현행 법관 전보인사의 문제점 진단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감소 및 사법신뢰 저해

- 법관의 주기적인 인사이동 및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감소
 - 매년 2~3월 사무분담 변경을 전후한 사건처리 저하 현상 발생
 - 인사이동(사무분담 변경 포함)의 주기가 평균적으로 2년인 경우 법관 1인당 업 무손실율은 8%에 이른다는 분석(1년 영업일 250일 기준)® ➡ 법관수로 환산하 면 법관 3,200여명 중 8%인 256여명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
- 재판 도중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하여 심리의 연속성 저하
 - 변론(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 게 됨
 -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소송법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운영이라 는 지적
- **사법불신**의 원인 중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재판지연 이슈와 맞물려 사법신뢰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재판 도중 재판부 변경의 배경을 두고 정치적 목적 등으로 오해가 불거지기도 함

■ 잦은 전보인사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

- 2017년 실시된 법관 상대 설문조사에서 <u>다수의 법관들은(375명, 응답자 중</u> 74.9%) '잦은 전보인사가 각급 법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법관료화를 심화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하였음
- 일반적인 전보인사가 형평에 기초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2~4년에 한 번씩

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2개월(영업일 기준 40일)의 업무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 🖒 인사주기가 2년인 경우 20일/년, 3 년인 경우 13.3일/년, 4년인 경우 10일/년, 5년인 경우 8일/년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손실(법관 1인당)이 발생 (2020 법관인사제도개선연구반)

전보인사의 대상이 되는 법관으로서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의식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법관 생활의 불안정 야기

- **잦은 전보**로 인한 생활 불안정
 - <u>잦은 전보로 인하여 이사, 자녀 전입학 등이 불가피</u> □ 이와 같은 생활 안정성 저해는 업무에 대한 집중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
- <mark>원거리 근무</mark>로 인한 생활 불안정
 - 잦은 전보와 별개로, 주거지로부터 원거리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법관 생활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됨
 - 가령, 수도권에 거주하는 법관에게 <u>장기간 지방권 시외지원 근무를 하게 하는</u> 경우 잦은 전보는 없지만 생활의 불안정은 더욱 심하다고 볼 수도 있음
 - 수도권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다수의 법관에게는 지방권 대부분이 이에 해당할 것임
- 법관 생활의 불안정은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 원인이자, 우수한 법조경력자 유** 치에 장애요소로 작용함
 - 특히 현행 인사패턴은 즉시임용 법관을 상정한 것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경우는 법조경력에 따라 부장 보임 직전 수도권 근무기간이 짧아지고, 특히 10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중 지방권 초임은 수도권 초임에 비하여 지방권 근무기간이 길고 수도권 근무기간은 짧음
- 법조일원화의 시행, 법관의 고령화 현상, "일과 삶의 양립"을 추구하는 인식의 확산 등 과거에 비하여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야 함 □ 더 이상 직업의식이 나 사명감만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
- 4. 법관 전보인사의 개선 방향 검토
- 가. 법관 부동성 원칙의 구현 가능성



■ 법관 전보인사의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 선발을 폐지하고 권역 별 또는 지역별 선발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법관 부동성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u>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대체로 임명 당시 법원에서 정년까지 근무</u>하고 법관의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권역별 또는 지역별 선발로 불필요한 전보인사를 방지함으로써 <u>업무의 효율</u> 성·연속성 및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관의 독립 강화 가능
- <u>장기간 누적된 재판지연 현상</u>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보인사를 획기적으로 줄 일 필요가 있음
- 한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법관의 재판역량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잦은 전보를 통해 장기근무를 단순히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u>임용심사 강화, 평정 제도 개선, 법관윤리 위반에 대한 감사 및 징계 강화, 엄정한 연임심사</u> 등을 통해 불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현 단계에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 선발로의 전면적 전환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함

- 지역 단위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u>변호사가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u> 산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변호사의 약 8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참고로 현재 전체 법관의 약 40%가 지방권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임
 - ▶ 개업변호사 지역별 현황 및 변동

78	2015년		2024년		중감	
구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12,750	73.2	22,087	75.5	▲ 9,337	▲ 2.3
인천·경기	1,605	9.2	2,427	8.3	▲ 822	▼ 0.9
지방	3,069	17.6	4,747	16.2	▲ 1,678	▼ 1.4
합계	17,424		29,261		▲11,837	

- 지방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충분한 변호사 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 법관 1인당 변호사 16.3명 > 지방권 법관 1인당 변호사 4.2명
 - ▶ 지역별 법관 1인당 개업변호사 수(명)

구분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합계
개업변호사	24,514	179	977	778	1,757	1,056	29,261
법관 현원	1,509	70	244	197	362	256	2,638
법관 1인당 변호사 수	16.3	2.6	4.0	3.9	4.8	4.1	11.1

- <u>수도권에서는 법관 지원 경쟁이 과열</u>되는 반면, <u>지방권에서는 적정한 법관 임</u>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 현재 법관 대다수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
 - 2024년 정기인사 기준 법관 총원 3,136명(대법원장 및 대법관 제외) 중 약 60%인 1,883명 9)이 서울 거주 ☞ 지방권 법원 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법관을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지역계속근무 희망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법관은 법관 총원의 약 4.7%인150여명에 불과(매년 변동)
 - 법조일원화 정착 후 임용되는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상당수도 수도권 근무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음
 - 2024년 1월 기준 **개업변호사 29,261명 중 약 75%인 22,087명이 서울에서 활동 ☞** 10대 대형로펌 전부가 서울 소재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관으로 임용된다면 근무하고 싶은 회 망 근무지역(고등법원 관할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 법원 관할이라는 응답이 80%를 차지¹⁰⁾

구분	서울고등	수원고등	부산고등	대전고등	광주고등	대구고등	합계
응답자수(명)	723	102	86	45	41	34	1,031

⁹⁾ 인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기준

¹⁰⁾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 (김주영 변호사 발제 부분)



비율(%) 70.1 9.9 8.3 4.4 4.0 3.3

- <u>지방권에서 충분한 규모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u> 어떤 방식으로든 **수도권** 보다 임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 현재에도 지방권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권역 외 전보를 시행하는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인사희망을 수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u>현재</u>지역계속근무 희망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법관은 소규모에 불과함
 - 지역별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임용 기준을 충족 하면서도 지방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방권에서는 임용 기준의 완화가 불가피함
- 지방권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경우 전국 지방법원 재판의 균질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전국 법관의 자질과 능력은 가능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 있음
 - 전국 사법서비스의 균질성이 손상되는 경우 <u>국민의 사법신뢰에 심각한 영향</u>을 초래
 - 국민들도 다양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2017년에 실시된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한 법원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한 판사보다
 2, 3년마다 서울, 경인, 지방의 법원을 옮기며 근무한 판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80%
 에 달함(2018년 인사제도 개선 논의 관련 자료집) ☞ 이러한 인식은 특히 수도권보다
 다 지방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편임
- 문: 선생님께서는 다음 두 종류의 판사 중 어느 판사가 재판을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전체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시	농어촌
한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판사	19.3%	20.5%	16.5%	19.9%	17.8%
서울, 경인, 지방의 법원을 옮기며 근무한 판사	80.7%	79.5%	83.5%	80.1%	82.2%

● 지방 권역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 사법신뢰를 약화시킬 우



려 있음

- 법관 지원유인이 크지 않은 지방권의 경우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변호사 등에 한하여 법과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된 경위를 고려하면 지역 주민과의 유착 등 재판의 불공정 성에 대한 의심이 불거질 우려가 큼
 - 권역 또는 지역 내에서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수 있지만 과거 지역법관제도에서도 권역 내 순환근무가 있었음에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한편으로 권역별 또는 지역별 선발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음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선발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법관 부 동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u>법관의 부동성 수요에 맞추어 장기근무를 확대</u>함으로써 법관 부동성 원칙의 점 진적 구현 가능
 - 선호지역(수도권 등)과 선호법원(전문법원 등)은 법관 사이의 형평에 반할 소지 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음
 - 비선호지역(지방권 등)과 비선호법원(비전문법원 등)의 경우 장기근무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현재에는 43개 법원에서 일정 기간(서울권 5년, 경인권 7년, 지방권 7년+3년)에 한 하여 시행 🖙 대상 법원 및 근무기간 확대 검토
 - 장기근무 확대로 인한 부작용(균질성 저하 또는 공정성 의심 등)은 미세조정을 통해 해소
 -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아 울러 근무 안정성 확보
 - <u>지방권 근무 여건을 개선</u>하고 <u>지방 권역에 정착하여 장기간 계속 근무할 유인</u> 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 있음
 - 지방권 관사의 개선 및 확충, 스마트워크의 확대 시행, 철도 등 운임 지원 확



대, 당직 제도 개편 등

- 비선호 지방권 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 특정 지역 계속 근무 법관에 친화적인 인사제도 개선 또는 인사 운영, 지역 장기 근무 수당 신설 등
- 장기적으로 <u>비선호지역(지방권 등) 근무 소요 자체를 감소하는 방법</u>도 법관 부 동성 확대 방안으로 고려 가능
 - 지방권 지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본원과 통·폐합하거나 본원에서 간헐적인 순회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 **지방권의 비변론 사건**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원 단위로 관할을 확대 하거나 전국을 관할하는 온라인 법원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

나. 법과 전보인사 주기의 장기화

- 법관 전보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법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보인사 주기를 장기화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관 부동성 원칙의 점진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보인사 주기를 장기화함으로써 오히려 생활의 안정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전보주기를 장기화하여 순환근무를 축소하면 일부 법관에게는 원거리 근무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임
 - 기본적으로 <u>전보인사 주기 장기화와 관련하여 가능한 방안을 상정</u>해보고, <u>각</u> <u>방안별로 원거리 근무 등으로 인하여 법관 생활의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는지,</u> <u>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u> 필요
- 법관 전보인사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현행 인사제도의 핵심적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전보인사 주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u>형평인사의 원칙에 의한 공정성과 예측가능</u> 성 확보, 이를 통한 법관 독립의 강화라는 장점이 후퇴되지 않는지 면밀한 점

검 필요

┗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 검토 요소





Ⅲ. 법관 전보인사의 주기 개편 및 유연화 방안 검토

1. 개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 전보인사 제도는 전보주기를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및 유연화 될 필요 있음
- 먼저,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 잔류 허용, 장기근무제도 등을 통하여 전보주기 장기화가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는 모습과 그 한계를 점검함
- 다음으로, 전보주기를 개편 및 유연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법관의 권역 내 순환근무를 축소하여 전보주기를 장기화하는 방안[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보인사를 장기화된 사무분담기 간과 연계하여 유연화하는 방안[②], 권역별 근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③]에 대하여 추가 검토함
 - [방안 ①] 권역 내 순환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 [방안 ②] 전보인사를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과 연계하는 방안
 - [방안 ③] 권역별 근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 2.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의 전보주기 장기화 현황

가. 개요

-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도 근무기간을 초과한 잔류희망 허용, 장기근무제도, 전 문법관제도 등을 통하여 전보주기 장기화를 추진하고 있음
- 나. 전보주기 장기화 현황
- 1) 근무기간을 초과한 잔류 허용
 - 공지사항
 - 『2024년 정기인사 인사희망원 등 신청 안내』

■ <u>근무기간을 초과한 잔류희망</u>이나 미달한 전출희망에 대해서는, 잔류 또는 전출을 희망하는 <u>구체적인 사유</u>, <u>초과 또는 미달하는 기간의 장단, 공석사정, 잔류 또는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의 규모 및 선호도, 법관인사의</u> 전체적인 형평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전보주기 장기화 현황11)

- 경향교류 법관
 - 지방권·경인권 일부 법원에서 1~2년 초과 잔류를 허용하거나 서울권 중 남 부·북부·서부 등 법원에서 1~2년 초과 잔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 지방 특정 권역 계속근무 법관
 - **본원(3년) 및 지원(2년)** 근무기간을 1~2년 초과하여 잔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2) 장기근무제도

■ 공지사항 등

장기근무제도 시행 안내(2020, 10, 29.)

■ 제도 취지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차원

- ① 사무분담 장기화 ⇨ 전문성 강화 가능
- ② 잦은 변론 또는 공판절차 갱신 지양 ⇨ 효율적인 사건처리, 장기미제 방지 가능
- 기존 의견수렴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43개 법원에서 장기근무 제도를 시행함
 - **장기근무법관 수**: **217명**(2024년 정기인사 기준)

■ 장기근무법관의 근무기간

● 권역별 장기근무기간

권역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기간	5년	7년	7년+3년

● 장기근무 대상 법원에서 근무 중인 법관이 장기근무 법관에 선정되었을 경우,

¹¹⁾ 매년 공석사정에 따라 유동적임을 감안하여야 함

해당 법원에서의 기존 근무기간은 장기근무 기간에 포함

- 서울・경인권 법원 장기근무 중 지방권 근무기간 도래하는 경우 <u>장기근무 기간</u> 내에는 경향교류를 유예함
 - 서울·경인권 법원에서 장기근무를 함에 따라 지방권 근무가 유예되는 경우 <u>지</u>법부장 보임시기 역시 유예되고, 그 유예기간은 최대 3년임
- **지방권 법원 장기근무** 중 지법부장 보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u>유예기간은</u> 최대 2년임

3) 가사 · 소년사건 전문법관제도

■ 공지사항 등

● 『2024년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선발 안내』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가정법원별로 선발되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단하게 됩니다. 2024년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전례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은 근무기간 중 경인권 근무가 면제되고(종래에는 지방권 근무도 면제되었으나, 2017년도에 선발된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부터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향교류법관과 같은 시기에 지방권 가정법 원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인천·수원가정법원에 근무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은 근무기간 중 권역 외 전보가 유보되며, 지방권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은 근무기간 중 지원 등 근무 및 타 고등법원 권역 의무근무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수: 38명(2024년 정기인사 기준)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의 근무기간
 - 권역별, 직위별 근무기간

권역	서울	경인·지방
지법부장	5년	4년
지법판사	6년	4년

● 기존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나, <u>합산 근무기간이 **서울가정**의 경우 **7년**, 그</u> **밖의 가정법원**의 경우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음

4) 의료 · 건설사건 전문법관제도



■ 공지사항 등

- 『2024년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선발 안내』
- 이번 정기인사에서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선발을 희망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들께서는 <u>의료사건</u> 분야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건설사건 분야의 경우 서울중앙·의정부·수원·부산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선발 여부 및 직위별 선발 인원은 법원별 공석사정 및 지원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수**: **15명**(2024년 정기인사 기준)

■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의 근무기간

- 4년 원칙으로 기존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나, <u>합산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u> 하게 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중 최대 <u>2년의 범위 내에서 권역 외 전보가 유보</u>되고, 지법판사의 경 우 그 기간 동안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이 유보될 수 있음

다.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의 한계

1) 자류희망 허용의 경우

■ 예측가능성 높지 않고 법원별 편차가 있음

- 매년 법관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u>미리 잔류 여부를 예</u> 측하기 쉽지 않음
- <u>법원의 특성, 규모, 선호도에 따라서도 허용 범위가 달라지므로</u> 일부 법원(서울 중앙・동부, 일부 지방권 지원 등)에는 근무기간 장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2) 장기근무법관제도, 전문법관제도의 경우

■ 일부 법관에 한정됨

- 장기근무법관, 전문법관은 <u>선발을 전제</u>로 하고 있음(장기근무법관: 217명, 가사·소년 전문법관: 38명, 의료·건설 전문법관: 15명)
- 일부 법원, 일부 분야(장기근무법관: 전국 43개 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 전

국 가정법원, 의료·건설 전문법관: 서울중앙, 수원 등)에 한정됨

3)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과의 불일치 문제

■ 사무분담 예규(2024. 2. 1. 개정, 재판예규 제1870호) 개정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법원, 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재판장인 법관: 3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2년(다만, 해당 법관을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 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무분담기간이 <u>3년</u>인 분담사무(본안사건¹²⁾의 재판장인 법관)¹³⁾: 민사항소, 민사합의, 민사단독, 형사항소, 형사합의, 형사단독, 가사항소, 가사합의, 가사단독, 행정합의, 행정단독(소송법상 '본안사건'에 한정)
- 사무분담기간이 <u>2년</u>인 분담사무(본안사건의 재판장이 아닌 법관): 민사항소·합의 배석, 형사항소·합의 배석, 가사항소·합의 배석, 행정합의 배석
- 사무분담기간이 <u>1년</u>인 분담사무: 민사소액, 형사고정, 민사신청합의, 민사신청단독, 가사비송단독,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 영장
 - 전국 법원의 본안사건 비율(회생 제외) 77.44%
 □ 비본안사건 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본안사건 담당 법관 80~90% 추정
 - **본안사건, 비본안사건의 재판부 수**(2023. 9. 30. 기준, 회생 제외)

78		dian.			
구분	서울	경인	지방	합계	
본안사건	318.63	266.79	440.95	1,026.37	
비본안사건	96.08	76.12	126.77	298.97	
본안사건 비율	76.83%	77.80%	77.67%	77.44%	

■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의 전보주기와 사무분담기간 불일치

¹²⁾ 소송법상 '본안사건'에 한정

¹³⁾ 회생은 민사 사무분담 외에는 본안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함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보인사 주기가 사무분담기간에** 비해 장기간일 필요가 있음 ☞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u>근무기간을 초과하는</u> <u>잔류 허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u> 전보주기와 사무분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지법부장의 경우

- 서울권 중 가정·시내 2년 근무 및 2차 지방권 2년 근무 중에는 기본 근무기간 이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과 일치하지 않음
- 특히, 서울권 중 가정, 동부는 기본 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통상 초과 잔류 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과 일치 불가능

● 지법판사의 경우

- 경인권 초임의 경향교류 후 경인권 2년 근무, 서울권 근무 중에는 기본 근무기 간이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과 일치하지 않음
- 특히, 서울권 중 중앙·가정·행정, 동부는 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통상 초 과 잔류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과 일치 불가능
 - □ 다만, 지법판사는 재판장이 아닌 법관으로서 근무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지역계속근무법관

- **지원 근무** 중에는 기본 근무기간이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과 일치하지 않음
- 3. [방안 ①] 권역 내 순환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가. 개요

■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전보주기 장기화 또는 유연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권역(서울/경인/지방) 내 순환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전보주기를 장기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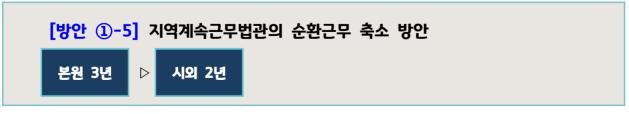
- 현행 인사패턴 상 권역 내 전보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순환근무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함
 - 지법부장



● 지법판사



● 지역계속근무법관



■ 잔류희망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은 현재에도 법관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허



용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mark>일률적으로</mark> 순환근무 축소 또는 폐지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법관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권역(서울/경인/지방) 내에서 순환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므로 권역별 수급현황에는 영향 없음
- 권역 내에서 해마다 법원별로 공석이 균일하지 않고 격차가 발생 ▷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경우 매년 공석이 일부 법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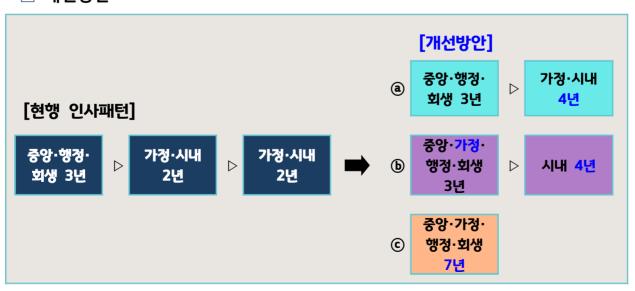
나. [방안 ①-1] 지법부장의 서울권 내 순환근무 축소 또는 폐지 방안

1) 개요

■ 현행 인사패턴

- 현재 지법부장 서울권 7년 = <u>중앙・행정・회생 3년 + 가정・시내 2년 + 가정・</u>시내 2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22년 정기인사부터 서울권 진입 시 공석사정 상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가 정 배치

■ 개선방안



2) 검토방안



■ [방안 ①-1-@] 중앙·행정·회생 3년 + 가정·시내 4년가정·시내 4년 + 중앙·행정·회생 3년

● 개요

- <u>가정·시내의 원칙적인 근무기간을 2년 → 4년</u>으로 장기화하여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방안

업무의 효율성 · 연속성 관점

- (+) 불필요한 순환근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 확보 가능
 - 서울권 내 가정・시내 근무 중에도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 준수 가능
 - ▶ 서울권 내 전보를 1회로 줄여 3+3+1과 같은 단기 전보 방지
-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특히, <u>가정・시내 4년 중 재판장인 법관 3년 + 재판장인 법관 1년 근무 후 전보</u>될 수 있음
 - 다만, 1년은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1년인 재판장(고정, 소액, 신청 등)으로 근무 가능하고, 동일 사무분담을 4년 내내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단기 전보 방지를 통해 생활 안정성 향상
- (-)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지 않은 법원(남부·북부) 근무 장기화 법관 발생 ⇔ 서울권 내 장기근무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님

● 법관 사이의 형평 관점

- (-) 상대적으로 선호법원인 동부·서부 또는 비선호법원인 남부·북부에 4년씩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형평 문제
 - ▶ 지방권 전보 시 형평순위에 반영하는 방법 고려 가능

● 전문법원의 특수성 고려 관점

- (-) 서울 가정은 장기근무법관 확대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



■ 서울가정법원 구성 현황(2024년 정기인사 기준)

구분	전체법관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지법부장	15	5
지법판사	21	7
합계	36	12

- ▶ 4년 근무 실시하는 경우 공석(법원장, 전문법관 제외 부장 10명) 감소 예상
- 업무의 특성상 본안사건의 비율이 낮은 편이고(63%)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가동인원 36명 중 12명)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기도 함 ☞ 경향교류법관의 장기근무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
- 개별 법관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하여 재판 역량을 균질하게 유지할 필요성도 있음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전문법원 고려
장점	·전보주기 장기화 통해 사무분담기 간 확보	·단기 전보 방지		·전보주기 장기화 로 예측가능성 향상	
단점	·시내 4년 중 3+1 등 사무분담 비효 율 가능성 존재	·비선호법원 근무 장기화 ⇔ 서울 권 내 근무는 감 내 가능	·선호법원(동부·서 부), 비선호법원 (남부·북부) 근무 장기화로 인한 형평 문제		·서울가정 장기근 무 필요성 낮음
검토	1	_	Û	1	Ţ

■ [방안 ①-1-⑥] 중앙·가정·행정·회생 3년 + 시내 4년시내 4년 + 중앙·가정·행정·회생 3년

● 개요

- ⓐ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가정은 중앙·행정·회생과 같은 군에 포함하는

방안

- (a) 방안에 대한 **보완점**
 - (+) 장기근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가정 특성 반영
 - (+) 서울가정은 선호도와 전문성 고려할 때 중앙·행정·회생과 같은 군에 포함 하여 순환근무 실시함(가정→시내)이 타당
 - 종래에는 서울가정 선호도 낮아 시내법원과 같은 군에 포함하여 순환근무 실시해 왔으나(중앙・행정・회생→가정 가능), 최근 가정법원 선호도 높아지고 전문성 강화 되어 중앙・행정・회생 후 가정 전보는 오히려 혜택으로 여겨짐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전문법원 고려
장점		·서울가정 장기근 무 필요성 상대 적으로 낮고, 선 호도 높아진 점 반영			
단점					
검토	1	-	Û	1	Û

■ [방안 ①-1-ⓒ] 중앙·행정·회생·가정·시내 7년

- 개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권 내에서의 전보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 F 서울권 내 순환근무의 폐지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부응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u>비선호법원 장기근무</u> 법관 다수 발생 ⇔ 서울권 내 비선호법원 장기근무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법관 사이의 형평 관점

- (-) 매년 공석 사정에 따라 7년의 근무지가 정해지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 훼손** 소지가 큼

 □ 비선호법원 장기근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적절한 보상책 마련 필요
 - 7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지방권 전보 시 서울권 선호/비선호법원 근무를 형평 순위에 반영할 필요성이 큼
 - ▶ 장기근무제도(서울권 근무기간 5년)의 개편 불가피

● 전문법원 등의 특수성 고려 관점

- (+) 행정·회생·가정법원의 전문성 강화 기대
- (-) 다만, 전문법원 등은 **장기근무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음
 - 서울 중앙・행정(법원장 제외 부장 14명)・희생(법원장 제외 부장 8명) 등에 일부 법관이 장기간 근무 ☞ 개별 법관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및 다양한 업무 경험 을 저해하는 측면
 - 서울 가정 7년 근무 원칙은 전문법관 제도(부장 근무기간 5년)와 병행 불가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전문법원 고려
장점	·사무분담기간 장 기화 추세에 적 극적 부응			·서울권 내 같은 법원 근무	
단점		·비선호법원 근무	·선호법원, 비선		·중앙·가정·행정·회



■ 검토의견 ▷ [방안 ①-1-⑥] 중앙·가정·행정·회생 3년 + 시내 4년 시내 4년 + 중앙·가정·행정·회생 3년

- <u>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u>하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u>서울가정의 특수성</u>을 반 영하는 적절한 방안
- 선호도가 다른 시내법원의 근무기간 장기화로 <u>법관 사이의 형평이 저해</u>되는 측면이 있으나, 서울권 내 선호/비선호법원 4년 근무는 <u>충분히 감내 가능하거나</u> <u>적어도 추후 인사에 반영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제</u>로 보임 ☞ 충분히 현실 가능한 방안

3) 시행을 위한 고려 사항

■ 시내법원 4년 근무를 다음 지방권 전보 시 형평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 긍정하는 견해

- <u>그동안에는 서울권 내 선호/비선호법원 사이에 순환근무를 실시</u>함으로써(동부⇔ 남부, 서부⇔북부) 형평을 도모하였으므로 지방권 전보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 선호/비선호법원 한 곳에서만 근무하게 된다면 형평의 관점에서 조정의 필요성 발생
- 이전 근무지의 선호도를 감안한 형평에 기초하여 다음 권역의 근무지를 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u>인사 관행과 법관 사회의 상식에 부합</u>함



- 서울권 내에서도 **시내법원(특히 동부와 남부)은 그동안 선호도가 충분히 누적**되 어 형평에 반영하기에 무리가 없음

● 부정하는 견해

- 서울권 내 법원 사이에는 교통 등 인프라의 차이가 적고 선호/비선호 여부는 개별 법관의 주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선호도나 근무여건에 따른 획 일적인 분류가 어려움
- 서울권 내 법원 사이에 선호도나 근무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 경인이나 지방 내 법원간의 차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추후 지방권 전보 시 이를 반영하는 경우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우려
- <u>사무분담까지 고려하였을 때</u> 서울권 내 법원 사이의 선호/비선호 여부 또는 근무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더욱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음 ☞ 가령, <u>동부</u> 형합 3년 + 1년이 남부 민단 3년 + 1년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가능

● 검토의견 ▷ 형평 반영을 긍정하는 견해

- 재판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등을 위하여 <u>기존에 유지되던 법관 사이의 형평을 일부 양보해야 하는 상황</u>이므로, 개별 법관들이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변화된 제도를 원만히 수용할 수 있도록 <u>세심한 조치가 병행될 필요</u>가 있음

■ 시행시기

- [①안] 2025년 서울권 신규 진입 법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방안
 - 2025년 정기인사에서의 예상 적용 범위

 경인권에서 서울권으로 신규 진입 가능 지법부장: 약 84명(30기~33기, 다만 2024년 정기인사에서 실제 서울권 신규 진입 지 법부장 약 54명)

2025년	서울권 신규진입 법관	증앙·행정·회생 근무 법관	가정 근무 법관	시내 근무 법관
적용 여부	0	X	X	X



- (+) 서울권 진입 전에 <u>장기화된 전보주기와 인사패턴을 고려하여 **인사희망원을** 제출할 기회를</u>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 (+) 2022년부터 서울권 신규 진입 법관 대부분은 중앙·가정·행정·회생에 배치 □ 2025년 서울권 신규 진입 법관이 시내법원으로 전보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면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전보주기 장기화 부작용 대비 가능
- (-) 2025년에 중앙·행정·회생에 신규 진입한 법관이 2028년에 시내법원에 전보된 후 3년차가 되는 203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된 전보주기 장기화 효과나타남
 - 다만, **2025년에 가정에 전보된 법관**의 경우 종래(2년 근무)와 달리 3년째 근무하게 되는 2027년에 전보주기 장기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②안] 2025년 정기인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현재 중앙·행정·회생에서 근무하는 법관도 3년 근무를 마친 경우 시내법원으로 전보하여 4년간 근무하게 하고, 가정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3년 근무 후 시내법원으로 로 전보하며(현재 중앙·행정·회생으로 전보), 시내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은 4년 근무를 마치기 전에는 전보를 불허하는 방안
 - 2025년 정기인사에서의 예상 적용 범위
 ⇒ 중앙・행정・회생에서 3년 근무를 마치는 지법부장: 중앙 17명(29기~31기), 행정 5명(29기~31기), 회생 2명(30기~31기) + 가정・시내법원에서 2년 근무를 마치는 지법부장: 서울가정 4명(30기~32기), 시내 36명(24기~30기)

2025년	서울권 신규진입 법관	증앙·행정·회생 근무 법관	가정 근무 법관	시내 근무 법관
적용 여부	0	0	0	0

- (+)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루 속히 전보주기 장기화를 실현할 필요
- (+) 통일적이고 간명한 인사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 (-) 2025년에 선호도 낮은 시내법원에서 2년 근무를 마치고 전출을 기대하는 법 관의 신뢰 저해
 □ 납득할 만한 설명 및 면밀한 의견수렴 등을 거치기에는 촉 박하 일정

- (-) 가정 근무 법관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하게 근무기간이 장기화되고, 특히 가정 근무 종료 후 중앙·행정·회생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
- [③안] 2025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하되, 가정·시내 근무 중인 법관에 대하여 적 용을 제외하는 방안
 - 중앙・행정・회생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3년 근무를 마친 경우 시내법원으로 전보하여 4년간 근무하게 하나, 현재 가정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종래와 같이 <u>2년 근무</u>를 마친 후 <u>중앙・행정・회생으로 전보</u>하고, 시내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도 종래와 같이 2년 근무를 마친 후 전보하는 방안
 - <u>적용 제외 범위</u>

 ⇒ 2025년 정기인사에 가정・시내법원에서 2년 근무를 마치는 지 법부장: 서울가정 **4명**(30기~32기) + 시내 **36명**(24기~30기)

2025년	서울권 신규진입 법관	증앙·행정·회생 근무 법관	가정 근무 법관	시내 근무 법관
적용 여부	0	0	X	X

- (+) 2025년에 가정·시내법원에 전보된 법관이 3년차가 되는 <u>2027년부터 전보주</u> 기 장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가정·시내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의 신뢰를 보호하는 절충안
- (-) 전보주기 장기화 효과가 다소 지연됨
- (-) 중앙·행정·회생 근무 법관의 경우 근무를 마친 후 <u>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u> 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
- [③-1안] 2025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하되, 시내법원 근무 중인 법관에 한하여 적 용을 제외하는 방안
 - 가정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3년 근무 후 시내법원으로 전보하나, 시내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종래와 같이 2년 근무를 마친 후 전보하는 방안
 - <u>적용 제외 범위</u>

 ⇒ 2025년 정기인사에 시내법원에서 2년 근무를 마치는 지법부장: 36명(24기~30기)



2025년	서울권 신규진입 법관	증앙·행정·회생 근무 법관	가정 근무 법관	시내 근무 법관
적용 여부	0	0	0	X

- (+) 시내법원 근무 법관의 신뢰 보호
- (-) 가정 근무 법관의 중앙·행정·회생에 대한 근무 기회 상실 우려
 - □ 다만, 가정 근무 법관은 현실적으로 행정・회생에 전보될 가능성이 드물고 최근 추세에 비추어 중앙 전보를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앙・행정・회생에 대한 근무 기회 상실이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음
- [③-2안] 2025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하되, 가정 근무 중인 법관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 시내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은 4년간 근무하게 하나, 현재 **가정에서 근무하는 법관은** 종래와 같이 **2년 근무**를 마친 후 중앙·행정·회생으로 전보하는 방안
 - <u>적용 제외 범위</u>

 ⇒ 2025년 정기인사에 가정에서 2년 근무를 마치는 지법부장: **4명** (30기~32기)

2025년	서울권 신규진입 법관	증앙·행정·회생 근무 법관	가정 근무 법관	시내 근무 법관
적용 여부	0	0	X	0

- (+) 2025년부터 어느 정도 전보주기 장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가정 에서 2년 근무를 마친 후 중앙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기회 보장
- (-) 시내법원 근무 법관의 신뢰 저해 요소 여전
- (-) 중앙·행정·회생 근무 법관의 가정 근무 기회 상실
- 검토의견 ▷ [③안] 2025년 정기인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가정·시내 근 무 중인 법관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 ①안에 의하는 경우 신뢰 저해 우려가 없으나, 전보주기 장기화 효과가 상당히 지연됨
 - ②, ③-1, 2안의 경우 서울권 내 전보주기 장기화를 조기 실현할 수 있으나, <u>현</u> <u>재 가정법원 및 선호도 낮은 시내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들의 신뢰를 고려</u>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③안은 <u>서울권 내 전보주기 장기화가 단계적으로 적정하게 구현</u>되면서도 <u>법관</u> 의 최소한의 신뢰를 보호하는 절충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방안 ①-2] 초임 지법판사의 순환근무 폐지 방안

1) 개요

■ 현행 인사패턴

- **수도권 초임**은 최초 임지에서 2년 초과 잔류 불허
- **지방권 시외지원 초임**은 의무적 본·지원 교류 대상이나 2023년 정기인사부터 잔류희망 모두 허용(지원 배치인력 부족)
- 개선방안 ▷ 초임지에서 4년간 전보하지 않는 방안



2) 검토방안

■ [방안 ①-2-@] 서울권 초임 중앙·시내 4년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취지와는 무관함
 - ▶ 초임 4년간 원칙적으로 배석만 가능 ➡ 사무분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단기 전보 방지를 통해 이사 등의 필요 감소
- (-) 한편으로 <u>서울권 내에서는 출퇴근이 상대적으로 용이</u>하므로 전보 방지 필요 성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법관 사이의 형평 및 재판역량 관점

- (-) 시내지법 초임의 경우 중앙·행정·회생 근무 기회 상실 문제
 - ▶ 초임 법관에게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하여 재판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특히, 수도권 초임인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경우 지방 근무를 마친 후 부장 보임
 전까지 수도권 근무기간이 짧아 중앙・행정・회생의 근무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음
- (-) 초임지 근무가 장기화 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큼
 - 통상 1차 지방권 전보 시 임용성적 기준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평을 반영하기 쉽지 않음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재판역량	예측 가능성
장점		.단기 전보 방지를 통해 이사 필요 감소⇔ 서울권은 단기 전보하더라도 출퇴근용이		·초임 4년간 같은 법 원 근무
단점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시내지법 초임의 중	

	취지와 무관		앙 등 근무기회 상실 ·초임지 근무 장기화 로 인한 형평 문제	
검토	_	-	↓	Û

■ [방안 ①-2-ⓑ] 경인권 초임 경인 4년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취지와는 무관함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단기 전보 방지를 통해 이사 등의 필요 감소
 -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법관에게는 원거리 근무가 길어지는 결과
- 법관 사이의 형평 및 재판역량 관점
 - (-) 경인권 초임법관의 중앙·행정·회생 근무 기회 상실
 - (-) 초임지 근무가 장기화 되는 경우 형평의 문제
- 법관 인력수급 관점
 - (+) 경인권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재판역량	예측 가능성
장점		·단기 전보 방지를 통해 이사 필요 감소		·초임 4년간 같은 법 원 근무
단점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취지와 무관	·서울에 거주하는 다 수의 법관에게 원거 리 근무가 장기화됨	·중앙 등 근무기회 상 실 ·초임지 근무 장기화 로 인항 형평 문제	



검토 - ↓ ☆

- [방안 ①-2-ⓒ] 지방권 초임 시외지원 4년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취지와는 무관함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단기 전보 방지를 통해 이사 등의 필요 감소
 - (-) 대도시 거주를 희망하는 다수의 법관에게는 원하지 않는 결과
 - 법관 사이의 형평 및 재판역량 관점
 - (-) 지방권 초임법관에 대한 본원 근무 기회 상실 문제
 - ▶ 항소, 행정, 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 상실
 - 법관 인력수급 관점
 - (+) 지방권 시외지원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재판역량	예측 가능성
장점		·단기 전보 방지를 통해 이사 필요 감소		·초임 4년간 같은 법 원 근무
단점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취지와 무관	·대도시 거주를 희망 하는 다수 법관의 의 사에 반함	·항소, 행정, 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할 기회 상실	
검토	-	Û	↓	Û

■ 검토의견 ▷ 소극(현행 유지)

● 법관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초임 법관의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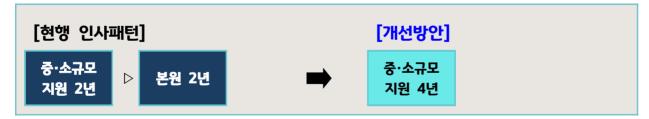


업무 기회를 제한하고 원거리 근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등 단점은 비교적 뚜렷함

- 라. [방안 ①-3] 수도권 초임 지법판사의 지방권 본 · 지원 교류 등 폐지 방안
- 1) 수도권 초임 법관의 본 지원 교류 폐지 방안
 - 수도권 초임 법관의 본·지원 교류 시행(2016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 수도권 초임이 중・소규모 지원(8인 이하)에 배치된 경우 공석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2년 근무 후 본원으로의 전보를 허용 ☞ 본원 외에 고등법원, 시내지 원도 전보 대상에 포함
 - **☞ 중・소규모 지원 현황**(2024년 정기인사 기준)

그룹	가동법관 수	지원
소규모	3명	영동, 의성, 영덕, 장흥, 남원
272	4명	공주, 제천, 거창
	5명	속초, 영월, 논산, 상주, 밀양, 해남
スフロ	6명	정읍
중규모	7명	안동, 경주
	8명	홍성, 충주

■ 개선방안



■ 장·단점 검토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동일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사무분담기간 확보
 - 2024년 정기인사에서 중·소규모 지원에 배치된 수도권 초임의 사무분담 🖒 15명



중 13명이 단독(민사・형사・가사) 업무 병행

- (-) 중·소규모 지원의 특성상 사무분담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성 낮음
 - 일반적으로 단독·배석 겸임 등으로 여러 업무를 병행하게 됨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종래에도 <u>중·소규모 지원 근무 법관들이 본원 전보를 일방적으로 선호하지</u> 는 않았음을 고려하면 미실시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
- (-) 중·소규모 지원 대부분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

● 법관 사이의 형평 및 재판역량 관점

- (+) 본·지원 교류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음
 - 당초 중・소규모 지원 근무 법관의 본・지원 교류는 다양한 재판경험, 법원장 지도하에 근무자세 함양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음 ☞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초임은 서울권에서 이미 본원 근무를 경험한 후 지방권 전보되고, 오히려 중・소규모 지원에서 각종 단독, 신청, 영장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조경력 및 법관 연령의 증가 등도 고려할 필요 있음
- (-) 본원에서 항소, 행정, 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 상실
- (-) 중·소규모 지원 근무가 장기화 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
 - 일부 시외지원은 추후 경인권 내지 지방권 전보 시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불편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

● 법관 인력수급 관점

- (+) 지방권 중·소규모 지원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
 - ▲ 최근 본·지원 교류 축소된 현실 고려 필요
- (-) 중·소규모 지원에서 근무하는 본·지원 교류 대상자들은 주요 고법배석(원 외부 포함) 자원 ☞ 본·지원 교류를 폐지하는 경우 고법배석 자원 확보</u>가 어 려울 수 있음



■ 검토의견 ▷ 소극(현행 유지)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 재판역량	예측 가능성
장점	·중·소규모 지원에서 단독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의 사무분담기간 확보		·본·지원 교류의 필요 성이 약해짐	·4년간 같은 법원 근 무
단점	·주로 단독·배석을 겸임하는 중·소규모 지원의 특성상 사무분 담기간을 준수할 필요성 낮음	·중·소규모 지원 대부 분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 ⇔ 종래에 도 본원 전보를 일방 적으로 선호하지 않 음	·항소, 행정, 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할 기회 상실 ·일부 격오지 소재 지 원은 불편이 지나치 게 큼	
검토	Û	↓	↓	Û

-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한다는 장점은 중·소규모 지원의 특성상 분명하지 않은 반면, <u>법관 생활의 불안정을 심화</u>하고 <u>형평을 저해</u>한다는 단점은 비교적 뚜렷 함
- <u>현재에도 인력수급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u>되고 있으므 로 순환근무 폐지 실익도 적음

2) 수도권 초임 법관의 본원 · 가정 교류 폐지 방안

- 가정법원 근무 법관의 본원 등 전보 허용(2009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 경향교류 법관으로서 가정법원에서 2년 근무한 법관의 본원 등 전보 허용

■ 개선방안





■ 장·단점 검토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가정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확보
 - (-) 수도권 초임법관은 지방권 가정법원에서 <u>주로 배석업무를 담당</u>하므로 장기 근무 실익 크지 않음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법관 사이의 형평 관점

- (-) 본원 근무 기회 상실 문제
 - ▶ 항소, 행정, 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 상실

● 법관 인력수급 관점

- (+) 지방권 가정법원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
 - ▶ 지방권 가정법원에 초임법관을 배치하지 않는 점 고려 필요
- (+) 종래에도 본워 전보 시행한 사례 많지 않음

● 가정법원의 특수성 고려

- (-) 가정법원 업무의 특성상 <u>사무분담기간을 준수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u> 이미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 존재
- (-) <u>지방권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의 근무기간(4년)과 같음 🖙 가사·소년사</u> 건 전문법관의 근무기간 등 재설정 필요
- 검토의견 ▷ 소극(현행 유지)

	업무의	법관 생활의	법관 사이의	예측 가능성	가정법원
--	-----	--------	--------	--------	------



	효율성·연속성	안정	형평		특수성 고려
장점	·장기간 근무하여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 확보	·가정법원은 대도 시에 위치		·4년간 같은 법 원 근무	
단점	·수도권 초임법관 은 주로 배석업무 담당하므로 장기 근무 실익 적음		·항소, 행정, 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 상실		·가정 업무 특성 상 사무분담기간 준수 필요성 낮 음 ·전문법관 제도와 의 관계 불분명
검토	-	_	•		1

● 수도권 초임 법관의 본·지원 교류 시행 여부와 다르게 보기 어려움

마. [방안 ①-4] 지법판사의 서울권 내 순환근무 축소 방안

1) 개요

■ 현행 인사패턴

- 현재 지방권 및 경인권 근무를 마친 지법판사의 부장 보임 전 서울권 근무기간
 ☆ 서울회생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2년 근무 원칙
- 다만, **서울권 전체 근무기간**은 임용방식, 법조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용방식, 법조경력 등에 따른 <u>서울권 근무기간을 확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순</u> 환근무 축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법판사의 부장 보임 전 서울권 근무기간

● 문제점

- 종래에는 즉시임용 법관 및 단기법조경력(3년) 법관이 대다수로 서울권 근무 최대 8년까지 가능 ☞ 다만, 즉시임용 법관은 2014년까지, 단기법조경력 법관은 2017년까지만 임용되어 현재 대부분 서울권 근무 중으로, 실제로 <u>남은 서울권</u> 근무기간은 그보다 짧음

- 2018년부터는 **일반법조경력(5년 이상) 법관** 등만 임용되므로 <u>서울권 근무기간이</u> 기존 법관들에 비해 짧음
- 즉시임용 법관



- 즉시임용 법관은 43기(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1년 후 임용)가 마지막으로, 현재 41기~43기의 남은 서울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S=서울, K=경인, R=지방. P=부장)¹⁴⁾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기수	초임	12	15	14	T2	TO	1/	TO	13	20	21	22	25	24	25	20	21	20	29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S	S	S		Р	
417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S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S	S	S		Р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S	S	F)
427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S	S	F)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S	S	F)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S	S	Р
437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S	S	Р

- 2025년 정기인사 기준 서울권 근무 **최대 4년**(43기 지방 초임) 남음
- **단기법조경력(3년**) 법관(법무관 포함)

¹⁴⁾ 휴직 · 연수 · 잔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패턴에 따라 이동하였을 경우를 가정



- 연수원 출신 단기법조경력 법관은 43기가 마지막으로, 현재 41~43기의 남은 서울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연!	도	15	16	17	10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	29
기수	초임	15	10	1/	18	19	20	21	22	25	24	25	20	21	28	29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Р	
417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Р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F	•
427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F	•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F	•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Р
437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Р

- 2025년 정기인사 기준 서울권 근무 **최대 4년**(43기 지방 초임) 남음
- 한편, 변시 출신 중 변시 1회~3회는 단기법조경력으로 임용되었고, 현재 남은 서울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연	도	16	17	10	10	20	21	22	22	24	25	26	27	20	29	20
기수	초임	10	1/	10	13	20	21	22	25	24	25	20	21	20	29	50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Ρ	
변1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Ρ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Ρ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P	•
변2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P	•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P	•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Р
변3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Р

- 2025년 정기인사 기준 서울권 근무 **최대 5년**(변3 지방 초임) 남음
- 일반법조경력(5년 이상) 법관



- 2018년부터 임용된 일반법조경력 법관 중 가령 44기(변4)~46기(변6)의 예상 서울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연!	E	21	22	22	24	25	26	27	20	20	20	21	22	22
기수	초임	21	22	25	24	25	20	21	28	29	<i>5</i> U	31	32	33
447	서울	S	S	S	S	R	R	R	R	K	K		Р	
44기 변4	경인	K	K	S	S	R	R	R	R	K	K		Р	
U4	지방	R	R	R	R	K	K	K	S	S	S		Р	
4531	서울		S	S	S	S	R	R	R	R	K	K	F	•
45기 변5	경인		K	K	S	S	R	R	R	R	K	K	F	•
ひっ	지방		R	R	R	R	K	K	K	S	S	S	F	•
4671	서울			S	S	S	S	R	R	R	R	K	K	Р
46기 변6	경인			K	K	S	S	R	R	R	R	K	K	Р
건이	지방			R	R	R	R	K	K	K	S	S	S	Р

■ 서울권 근무는 지방 초임에 한하여 최대 3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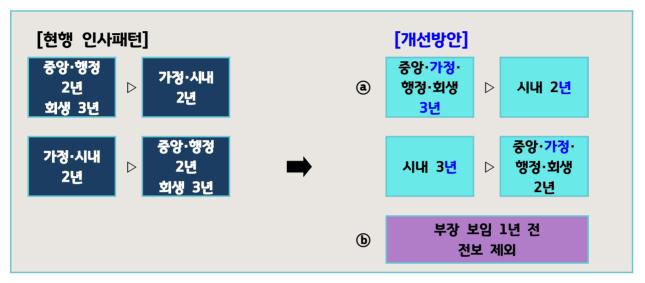
■ 개선방안

즉시임용 및 단기법조경력 법관의 남은 서울권 근무기간(최대 4~5년)과 일반법
 조경력 법관의 예상 서울권 근무기간(최대 3년)을 고려 □ 서울권 전체 근무기



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

- 순환근무 폐지 방안은 지법부장과 같은 이유로 소극 검토



2) 검토방안

■ [방안 ①-4-@] 중앙·가정·행정·회생 3년 + 시내 2년시내 3년 + 중앙·가정·행정·회생 2년

● 개요

- 지법판사의 부장 보임 전 서울권 내 근무주기를 지법부장(중앙·가정·행정· 회생 3년)과 가급적 통일하여 서울권 내 전보인사 주기를 단순화하는 방안
 - □ 다만, 서울권 근무기간이 최대 5년이므로 한 법원에 3년 근무 후 다음 법원 근무기 간을 2년으로 정함이 불가피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다만, <u>배석 보임 시에는 사무분담기간 2년</u>이므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특히, 근무기간 3년 중 <u>배석 2년 + 재판장 1년 근무 후 전보</u>될 수 있음



- (-) 개별 법관마다 임용방식, 법조경력, 초임지, 휴직사용 여부 등에 따라 부장보임 전 서울권 근무기간이 다름 ➡ 서울권 근무기간이 4년인 경우 3년 + 1년 등 단기 전보 불가피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전보주기 장기화를 통해 법관 생활의 안정성 도모
- (-) 비선호법원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는 법관 발생

● 법관 사이의 형평 관점

- - ▼술하는 ⓑ안(부장 보임 1년 전 전보 제외)과 결합하여 4년 근무하는 경우 중앙이
 나 가정・행정・회생 등 전문법원에만 4년 근무하는 법관과 시내법원에만 4년 근무하는 법관 사이에 형평이 저해될 우려가 더욱 큼

● 가정법원의 특수성 고려 관점

- (+) 서울가정은 선호도와 전문성 고려하면 중앙·행정·회생과 같은 군에 포함 하여 순환근무 실시함(가정→시내)이 타당
 - ▼ 종래에는 서울가정 선호도 낮아 시내법원과 같은 군에 포함하여 순환근무 실시해 왔으나(중앙・행정・회생→가정 가능), 최근 가정법원 선호도 높아지고 전문성 강화 되는 측면 고려할 필요

종합 검토 ▷ 소극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가정법원 특수성 고려
장점	·전보주기 장기화 통해 사무분담기	·전보주기 장기화		·전보주기 장기화 로 예측가능성	·서울가정 선호도 높아진 점 반영

	간 확보			상승 ⇔ 1년 등 단기 전보 가능 성	
단점	·배석인 경우 사 무분담기간 2년 이므로 전보주기 와 불일치 ·1년 등 단기 사 무분담 가능성	·비선호법원 근무 장기화 ·1년 등 단기 전 보 가능성	·서울권 내 한 법 원에만 근무로 인한 형평 문제 (특히 ⑥안과 결 합하는 경우)		
검토	仓	_	•	_	Û

- 현재 지법판사의 부장 보임 전 서울권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이고 특히 일반법조 경력 법관의 경우 3년 이하인 상황에서 전보주기를 수정할 실익이 크지 않음 때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에 대한 개편과 함께 논의될 필요 있음
- 특히, 서울권 근무기간이 4년인 경우 3+1의 단기 전보가 불가피하거나 또는 서울권 내 한 법원에만 근무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방안 ①-4-⑥]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 제외

● 개요

- 지법부장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 제외 □ 1년 단기근무를 방지하는 방안
 -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예정 포함) 법관¹⁵⁾

연도	2024	2025	2026
전보(예정) 법관	1316)	12	21

- ⓐ안과 결합하거나 현행 인사패턴 유지하면서 시행 가능
 - ▶ 경인권에도 시행 가능

^{15) 2025}년 부장 보임 예정자 중 2024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권 내 전보 법관: 13명 2026년 부장 보임 예정자 중 2025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권 내 전보 대상 법관: 12명 2027년 부장 보임 예정자 2026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권 내 전보 대상 법관: 21명

¹⁶⁾ 행정처, 연수원, 연구원 등 선발성 보직 근무 후 서울권 내 전보된 인원 제외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개별 법관마다 부장 보임 전 서울권 근무기간이 다름을 고려 ☞ <u>사무분담기</u> 간 최소 2년 확보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단기 전보를 방지함으로써 법관 생활의 안정성 도모
- (-) 개별 법관의 상황에 따라 1년이라도 주거지에 가까운 법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음

● 법관 사이의 형평 관점

- (+) 단기 전보를 조절하는 목적이므로 형평 저해 소지 적음
- (-)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중 서울 초임 법관과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 자 임용 법관 중 일부는 지법부장 보임 전 서울권 근무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 부장 보임 전 **각 법원 근무기간이 1년씩 연장**될 수 있음
 - 현행 인사패턴에 따르더라도 중앙・행정 3년 또는 회생 4년, 상대적으로 선호도 낮은 남부・북부 5년 근무 허용하는 경우 발생 ☞ 남부・북부의 경우 장기근무법관의 근무기간과 같아 관계설정 필요
 - 전보가 불허되어 선호도 낮은 사무분담을 연이어 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관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음

● 종합 검토 ▷ 적극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특수법원 등 고려
장점	·단기 전보 방지 하여 최소 사무 분담기간 확보	·단기 전보 방지	·단기 전보 방지 목적	·단기전보방지로예측가능성상승	
단점		·개별 법관의 상 황에 따라 전보	·선호/비선호법원 근무기간 장기화		·중앙·가정·행정· 회생 근무기간



		를 희망할 수 있 음	가능성		장기화, 남부·북 부 5년 근무 가 능하여 장기근무 법관 근무기간과 같아지는 문제
검토	1	-	Û		Ţ

- 단기 전보를 방지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시행 범위와 관련하여 모든 권역에 시행하는 방안, 서울권 내에서만 실시하고 경인권에서 서울권으로의 전보는 허용하는 방안,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2025년 정기인사에 즉시 시행하는 방안,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바. [방안 ①-5] 지역계속근무법관의 순환근무 축소 방안

1) 개요



● 2014년 지역법관제도 폐지 ⇨ 지역계속근무법관은 특정성이 없음



- 현재 지역계속근무 희망 의사를 표시한 법관은 약 150명임 ☞ 매년 변동
- 지역계속근무법관의 본원과 지원 <u>1년 잔류</u>는 잔류 희망 법원의 선호도 및 공석 사정 등 고려하되 대체로 허용

● 본원 근무비율

- 현실적으로 <u>본원 4년(1년 연장) + 지원 2년</u>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본원 근 무비율 **66%**
- [방안 ①-5-@] 62.5%, [방안 ①-5-⑥] 57.1%

2) 검토방안

- [방안 ①-5-@] 본원 5년 + 지원 3년 지원 3년 + 본원 5년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전반적으로 지역계속근무법관의 **전보주기 장기화** 가능
 - (-) <u>배석의 경우 사무분담기간이 2년</u>이므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 동일 고등법원 권역 7년 근무 원칙에 배치되는 측면
 - 실제로 동일 고등법원 권역에 최대 10년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본 원 5년 + 지원 3년 + 본원 2년 후 권역 외 전보 ☞ 권역 내 최대 근무기간 상향 필요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본원 장기근무를 통해 생활 안정성 보장
- (-) 지원 3년 근무는 대도시 거주하는 대다수 지역계속근무법관에게 불편 가중



● 법관 사이의 형평 및 인력수급 관점

- (+) 본원 근무비율이 종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 대부분의 본원은 지방권 내 선호법원임 □ 지역계속근무법관의 5년 근무를 허용하게 되면 경향교류 법관의 공석 감소 가능성
 - 지역계속근무법관은 특정성이 없으므로 본원 5년 근무 후 경인권 진입을 희망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 경향교류 지법부장의 경우 본원 최대 4년 근무 가능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인력수급	예측 가능성
장점	·전보주기 장기화를 통한 사무분담기간 확보	.본원 근무기간 연장	.본원 근무비율 유지	.근무기간 장기화
단점	·배석인 경우 사무분 담기간이 2년이므로 근무기간과 불일치 ·동일 권역 7년 근무 원칙에 배치되는 측 면	.지원 근무기간 연장	·경향교류 법관의 본 원 공석 감소	
검토	宁	-	↓	· ·

■ [방안 ①-5-⑥] 본원 4년 + 지원 3년 지원 3년 + 본원 4년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 3년 확보
 - (-) 배석의 사무분담기간과 불일치
- 법관 생활의 안정성 관점



- (-) 본원 근무비율 9.5% 감소 □ 지원 3년 근무는 <u>대도시 거주하는 대다수 지역</u> 계속근무법관에게 불편 가중

● 법관 사이의 형평 관점

- (+) 서울권 내 전보주기 장기화 정책과 일관성 필요
- (-) 지역계속근무법관의 근무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

● 종합 검토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장점	·전보주기 장기화를 통한 사무분담기간 확보		·서울권 내 전보주기 장기화 정책과 일관 성 필요	.근무기간 장기화
단점	·배석인 경우 사무분 담기간이 2년이므로 근무기간과 불일치	·지원 근무기간 연장	·지역계속근무법관의 지원유인 감소	
검토	Û	Ţ	-	仓

■ 검토의견 ▷ 소극

- 지역계속근무법관이 지방권 인력수급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시외지원 근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근무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시행을 고려하더라도 <u>서울권 전보주기 장기화 시행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u> 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계속근무법관의 권역 내 최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무유인 독려 방안 과 통합적으로 시행할 필요



- 4. [방안 ②] 법관 전보인사를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과 연계하는 방안가. 개요
 - 법관의 전보주기를 장기화하더라도 사무분담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가령, [방안 ①-1-⑤]에 따라 지법부장의 서울권 시내법원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장기화하더라도 <u>재판장인 법관 3년 + 재판장인 법관 1년</u> 근무 후 전보되는 경우 사무분담기간과 일치하지 않음
 - 근무기간이 3년인 경우 재판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 사무분담기간과 일치할 수 있으나 <u>소액・영장・고정 등 1년 + 재판장인 법관 2년</u> 근무 후 전보되는 경우 사무분담기간과 일치하지 않음
 - 전보주기를 사무분담기간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무분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유예하는 방안
 - 다만, 사무분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관 전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일률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은 부작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함
 - 법관 생활의 안정성 위협, 예측가능성 저하
 - 원거리 또는 비선호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추가 근무가 강제되는 결과
 - 사무분담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권역별 근무기간 역시 예측할 수 없음
 - 법관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움
 - 개별 법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호/비선호법원에서 1, 2년 초과 근무를 하는 비 전형적인 경우가 다수 발생
 - 비선호법원 잔류 법관의 강한 반발 예상됨 ⇒ 근무의욕 저하 우려
 - 아래에서는 사무분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관 중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인사를 개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나. 법관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권역별 인력수급에의 영향

- 권역별로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의 전보유예 희망 인원이 균형을 이루는 경 우 권역별 인력수급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다만, 현실적으로 권역별 전보유예 희망 인원에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때년 전반적인 인력수급 사정에 의존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함이 불가피
 - 지방권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권 전보유예 희망은 불허하고 지방권 전보유 예 희망은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용
 - 경인권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권 전보유예 희망은 불허하고 경인권 전보유 예 희망은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용
- 특정 권역에 전보유예 허가자가 집중되는 경우 그 후 1~2년 내 해당 권역에 전 출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고려 필요 ⇒ 결국 권역별 전보유예 허가 인원에 불균 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필요
 - 서울권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고르게 시행함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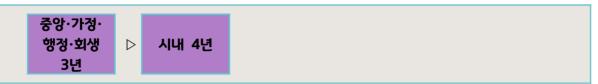
■ 각 권역 내 인력수급에의 영향

- 법원별/연도별로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의 전보유예 희망 인원에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특정 법원 또는 특정 연도에 전보유예 허가자가 집중되는 경우 <u>해마다 법원별</u> 로 공석이 일정하지 않고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다. 검토방안

- 1) [②-1안]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 권역 내 전보인사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 개요

- 권역 내 전보 시 사무분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u>희망에 따라 타 법원에</u> 전보하지 않고 잔류를 허용하는 방안
- 상술한 검토방안에 따를 때 권역 내 전보 시 사무분담기간 잔존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지법부장의 서울권 근무(3+4 등), 지방권 근무를 마친 지법판사의 서울권 근무(2+2+2 등), 지역계속근무법관의 본・지원 순환근무(4+3) 등임
 - **지법부장의 서울궈 근무**(개선방안 ①-1-ⓑ)



■ 지법판사의 서울권 근무(현행 인사패턴)



■ 지역계속근무법관의 본·지원 순환근무(개선방안 ①-5-ⓑ)



■ 장·단점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의 실효성 확보 가능
 - ▶ 가령, 지법부장의 서울중앙 근무 중 소액・고정 1년 + 본안 재판장 2년 근무 후 일
 괄 전보되지 않고 본안 재판장 3년 근무 가능
 - (-) 권역 외 전보유예는 불가하므로 **지방권으로 전보되기 직전** 사무분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함
 - 가령, 지법판사의 서울권 근무기간이 4년 남은 경우 재판장 3년(사무분담기간 만료시까지 1년 전보 유예) + 재판장 1년 근무 후 지방권 전보 ➡ 기존의 재판장 2년 + 재판장 2년 근무에 비하여 사무분담 장기화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 것인지 의문



● 법관 사이의 형평 및 예측가능성 관점

- (+) 현행 인사기준 하에서도 통상적인 근무기간 만료 후 <u>1~2년간 잔류가 가능한</u> 경우가 있음 ⇨ 이를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시행에 부담이 적음
- (-)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 잔류희망 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선호법원(서울권 중 중앙·행정, 동부·서부, 지방권 중 대전·대구·부산 등 본원)에 잔류 법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 ⇨ 선호법원에 공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선호법원에 근무하지 못하는 법관 발생
- (-) 선호법원 등에 일정한 공석 확보를 위해 <u>일부에게만 잔류희망을 허가하는</u> 경우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고 허가/불허가 법관 사이에 위화감 발생 우려
- (-) <u>권역 내 선호법원에 잔류하는 법관</u>을 형평의 관점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 지 문제
 - ♣ 추후 지방권 전보 시(지역계속근무법관의 경우 지원 전보 시) 서울권 선호법원 초 과근무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선호법원에서 비선호보직을 담당한 경우 vs 비선호법원에서 선호보직을 담당한 경우의 우선순위 등 여러 민감한 문제 산재

● 전문법원 등의 특수성 고려 관점

- (-) 서울 중앙·가정·행정 등은 잔류 법관 확대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
 - 서울 중앙・행정 등에 일부 법관이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개별 법관에 대한 균등 한 기회 보장 및 다양한 업무 경험을 저해하는 측면
 - 서울 가정은 업무의 특성상 본안사건의 비율이 낮은 편이고(63%) 가사소년 전문법 관을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현재 가동인원 36명 중 14명)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 기도 하므로, 장기근무의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

■ 종합 검토

업무의 법관 생활의 법관 사이의 예측 가능성 전문법원



	효율성·연속성	안정	형평		등의 특수성 고려
장점	·장기화된 사무분 담기간의 실효성 확보 가능	·희망 법관에 한 하여 시행하므로 생활 안정성 저 해 소지 적음	·현행 잔류희망 허가를 확장하여 시행하는 것에 불과		
단점	·지방권 전보 시 사무분담기간 준 수 불가		·허가/불허가법관사이의위화감·선호법원잔류법관형평반영문제	·일부에게만 허가 하는 경우 예측 가능성 높지 않 음	.많은법관에게다양한업무경험필요.서울가정은장기근무필요성낮음
검토	1	Û	Û	Ţ	Û

2) [②-2안]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 권역 외 전보인사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 개요

● 권역 외(지방→경인, 경인→서울, 서울→지방) 전보 시에도 사무분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희망에 따라 타 권역에 전보하지 않고 잔류(부장 보임 유예포함)를 허용하는 방안

■ 장·단점

● 권역별 인력수급 관점

- (+) 지방권 근무 법관의 잔류를 폭넓게 허가하는 경우 <u>지방권 부족 해소 수단</u>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다만, 지방권 선호법원(대전, 대구, 부산 등)에 잔류희망이 집중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지방권 부족 해소 수단으로 활용 어려움
- (+) 현행 인사기준 하에서도 경인권, 지방권에서는 1~2년간 잔류가 가능한 경우 가 있음 ➡ 이를 다소 확장하여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력수급 사정에 제한 적 영향 예상

- (-) 매년 잔류희망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 □ 가령, 지방권에서 잔류희망을 관대하게 허용하다가 어느 해에 <u>잔류희망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기존 잔류인원까지 포함하여 전출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되어 원활한 인력수급에 지장</u>이생길 수 있음
 - □ 다만, 매년 권역별 잔류 인원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적정한 제도 운용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론 가능

업무의 효율성 · 연속성 관점

- (+) <u>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추세를 뒷받침</u>하기 위하여 권역 내외의 전보인사에 전 면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함

● 법관 사이의 형평 및 예측가능성 관점

- (+) 현행 인사기준 하에서도 권역 외 전보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관 들의 거부감이나 파장이 크지 않을 것임
- (-) 서울권에서 지방권으로 전보 시 <u>사무분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서울권에 잔류</u>할 수 있게 되고, 사무분담기간이 남지 않은 법관은 잔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
 - ▶ 서울권 잔류 여부는 법관들 사이에 매우 민감한 문제임
- (-) 매년 법관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u>일부에게만 허가하는 것으로 운영될</u> 가능성이 높음 ⇒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고 허가·불허가 법관 사이에 위화감 발생 우려
 - 많은 법관의 잔류희망이 불허가 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 논란 우려
- (-) 서울권 잔류 법관을 형평의 관점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
 - 잔류 기회를 얻지 못한 법관 입장에서는 선호법원 등에서의 잔류기간만큼 지방권 추가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 잔류 허가 법관 입장에서는 사무분담기간 준수를 위해 잔류한 것이므로 불이익 부 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종합 검토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장점	·지방권부족해소수단으로활용가능·적정한제도운용으로일정한인력수급유지가능	·사무분담기간 장 기화 추세를 전 면적으로 뒷받침	·희망 법관에 한 하여 시행하므로 생활 안정성 저 해 소지 적음		
단점	·매년 잔류희망 인원을 예측할 수 없어 인력수 급 문제 발생 가 능성 높음			·사무분담기간 만료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서울권 잔류 기회 부여 문제 ·허가/불허가 법관 사이의 위화감 가성물권 잔류 법관 형평 반영 문제	·일부에게만 허가 하는 경우 예측 가능성 높지 않 음
검토	Û	1		1	Ţ

3) 검토의견 ▷ 소극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추세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있음
- 다만, 희망에 따라 시행하므로 권역 내외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법원에 잔류희망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일부에게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불가피 ☞ 허가/불허가 법관 사이에 위화감 발생 및 허가 기준에 관하여 논란 이 불거질 우려 적지 않음
-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성격상 민감한 사건의 경우 담당 법관의 잔류 희망



에 대한 허가/불허가 여부가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면, <u>인사발령에 의하여 재판</u> 부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음 ☞ 사법신뢰 저하 가능성

● 권역 외 전보유예 허용방안의 경우 매년 잔류희망 인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인력수급에 차질 우려



5. [방안 ③] 권역별 근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 가. [방안 ③-1] 지법부장의 서울권 근무기간을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 개요
 -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을 고려하여 <u>서울권 근무를 3+3 형태로 운용</u> 하는 방안
 - 서울권 내 모든 법원의 근무기간을 최소 3년으로 개편할 경우를 전제로 함

■ 장・단점

- 권역별 인력수급 관점
 - (+)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 개선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과 일치 때 단기 전보 방지
 - (-) 사무분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함
 - ▶ 소액, 고정, 영장 등의 업무 후에는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을 채울 수 없음
 - 남부・북부에서 4년 근무한 후 중앙 등에서 2년 근무 불가피
- 법관 생활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관점
 - (+) 서울권 내 전보인사 단순화 🕼 예측가능성 제고
 - (-) <u>지법부장들의 신뢰 저하</u> 우려 ☞ 서울권 7년 근무 권리가 박탈된다고 인식 할 여지
 - 장기재직 지법부장의 처우에 대한 실망이 커질 수 있음
- 전보인사 관련 환경 변화 고려
 - (+) 지법부장의 서울권 근무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2013년) 이후 <u>전보</u> 인사 관련 환경 변화 반영 필요



- 당시 고법부장 보임 지연 & 퇴직감소 등으로 서울권 6년 초과 근무 지법부장 급증
 이 예상되어(2013년 5명, 2014년 11명) 시행된 조치 ☞ 장기재직 지법부장의 꾸준한
 증가 및 2차 경향교류의 정착 등으로 서울권 근무기간 조정 여지
- 7년 연장은 시내지법 2년 + 중앙 3년 + 시내지법 1년 등의 단기 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법원별 근무기간 3년으로 연장된 이상 7년 유지 당위성 낮아짐

■ 검토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장점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 개선	·장기화된 사무분 담기간과 일치			·전보인사 단순화 로 예측가능성 제고
단점		·현실적으로 사무 부담기간과 불일 치하는 경우 발 생 가능	·지법부장들의 신 뢰 저하 우려		
검토	仓	Û	+	-	仓

지법부장들의 신뢰를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근무기간 단축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있으나, 지방권 근무기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

나. [방안 ③-2] 지법부장의 서울권 근무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 개요

●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을 고려하여 <u>서울권 근무를 3+3+3 형태로 운</u> 용하는 방안

■ 장·단점

● 권역별 인력수급 관점

- (-)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 악화
 - ▶ 2차 경향교류 예정 지법부장17)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33	44	51	49	41	1818)

- ▶ 2차 경향교류를 2년 지연 실시하는 경우 2026년 기준 77명의 지방권 공석 발생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관점
 -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과 일치 ☞ 단기 전보 방지
 - (-) 사무분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
- 법관 생활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관점
 - (+) 서울권 내 전보인사 단순화 🖙 예측가능성 제고
 - (+) **장기재직 지법부장에 대한 배려** □ 생활 안정성 강화

■ 검토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 가능성
장점		·장기화된 사무분 담기간과 일치	·장기재직 지법부 장의 생활 안정 성 강화		·전보인사 단순화 로 예측가능성 제고
단점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 악화	·현실적으로 사무 부담기간과 불일 치하는 경우 발 생 가능			
검토	1	宁	1	-	Û

● 일률적인 서울권 근무기간 연장은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에 심각한 악영향

¹⁷⁾ 경인권 근무 지법부장이 최소 근무기간을 마치고 서울권에 진입하여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함

^{18) 2023}년 32기 지법부장이 서울권으로 진입하지 못함에 따른 일시적 감소



- 특히, 향후 법관 증원 여부에 따른 신임법관의 규모, 법조경력별 임용 비율과 인사희망 경향 및 휴직 여부 등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지방권 법관 인력수급 사정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한계가 있음



Ⅳ.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을 위한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1. 검토 배경

- 가. 법조경력자 임용 현황
 -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이후(2013년 이후) 법관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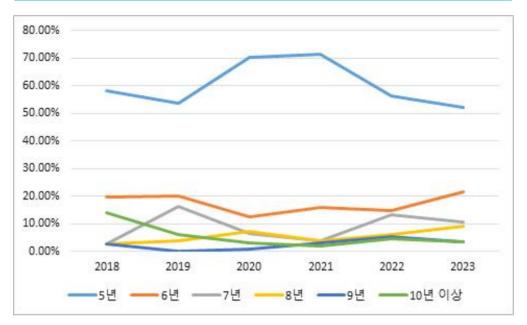
임성	용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즉시	시임 용	32	9	-	-	-	-	-	-	-	-	-	-
단기	사법연수원	57	51	52	74	107	-	-	-	-	-	-	-
법조 경력자	법전원	-	-	37	26	25	-	-	-	-	-	-	-
일반 법	拭조경력 자	11	19	18	8	27	36	80	155	156	135	121	-
전달	감법관	3	3	4	-	2	2	2	3	1	4	2	3
개발	별임 용	-	1	-	1	-	1	1	-	-	-	-	_
Ę	깤계	103	83	111	109	161	39	83	158	157	139	123	3

- 즉시임용 법관은 2014년까지, 단기법조경력 법관은 2017년까지 임용 ➡ <u>2018년</u> 부터는 일반법조경력(5년 이상) 법관 및 전담법관 등만 임용
- 법조경력 기간별 법관임용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14 7424	인원	21	43	109	111	76	63
5년 경력	비율	58.3%	53.8%	70.3%	71.2%	56.3%	52.1%
C14 7474	인원	7	16	19	25	20	26
6년 경력	비율	19.5%	20.0%	12.3%	16.0%	14.8%	21.5%
711 7424	인원	1	13	10	6	18	13
7년 경력	비율	2.7%	16.2%	6.4%	3.8%	13.3%	10.7%
이년 겨려	인원	1	3	11	6	8	11
8년 경력	비율	2.78%	3.75%	7.10%	3.85%	5.93%	9.09%
이년 경령	인원	1	0	1	5	7	4
9년 경력	비율	2.78%	0.00%	0.65%	3.21%	5.19%	3.31%



ገበር፤ ሰነልት	인원	5	5	5	3	6	4
10년 이상	비율	13.9%	6.2%	3.2%	1.9%	4.4%	3.3%
임용자 수	합계	36	80	155	156	135	121



● <u>법조경력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u>하나 법조경력 7년 이 상인 경우도 20% 내외로 적지 않음

나.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

●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 ② 판사는 <u>5년 이상</u>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신규 임용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됨 ☞ 최근 신규 임용 규모와 법조경력 기간 별 임용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임용된 법관의 평생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 필요
 - 변화된 임용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시대의 인사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 개편 필요성

- 가. 현행 인사패턴 (S=서울권, K=경인권, R=지방권, P=부장 보임)
 - 기존 법관
 - 즉시임용 법관

연차 ¹⁹⁾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S	S	S	Р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S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S	S	S	Р

- 법관경력 15년(법조경력 15년) 후 부장 보임
- ▶ 초임지 불문 수도권 11년, 지방권 4년 근무
- 단기법조경력(3년) 법관

연차 초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Р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Р

- 법관경력 12년(법조경력 15년) 후 부장 보임
- ▶ 초임지 불문 수도권 8년, 지방권 4년 근무

연차 초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Р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Р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¹⁹⁾ 법조경력 연차(이하 같음)

● 개요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에 대한 새로운 임용 절차에 따라 부장 보임이 1년 지연 됨 ➡ 법조경력 16년 후 부장 보임
- 부장 보임에 필요한 법조경력은 동일하므로, 임용 당시 법조경력에 따라 부장 보임 전 법관 근무기간이 단축됨
- 5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R	R	R	R	K	K	Р
경인	K	K	S	S	R	R	R	R	K	K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Р

- 법관경력 10년 후 부장 보임
- ▶ 초임지 불문 수도권 6년, 지방권 4년 근무
- 7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R	R	R	R	Р
경인	K	K	S	S	R	R	R	R	Р
지방	R	R	R	R	K	K	K	S	Р

- 법관경력 8년 후 부장 보임
- ▶ 초임지 불문 수도권 4년, 지방권 4년 근무
- 10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R	Р
경인	K	K	S	S	R	Р
지방	R	R	R	R	K	Р

- 법관경력 5년 후 부장 보임
- 수도권 초임: 수도권 4년, 지방권 1년 ⇔ 지방권 초임: 수도권 1년, 지방권 4년



● 11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Р
경인	K	K	S	S	Р
지방	R	R	R	R	Р

- ▶ 법관경력 최소 4년 후 부장 보임(2019년 정책결정)
- 수도권 초임: 수도권 4년 ⇔ 지방권 초임: 지방권 4년

나.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에 관한 문제의식

1) 법관경력 요건의 강화 필요성

■ 현행 인사제도

- 현재는 <u>법관 임용 전 법조경력을 법관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u>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
 - 법관 임용 전 법조경력은 법관 임용 시 호봉 승급기간,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됨이 원칙
 - 법관 임용 전 법조경력은 부장 보임을 위한 법조경력에도 전부 산입됨 🖙 <u>법관</u> 임용 전 법조경력이 길어질수록 **부장 보임에 필요한 법관경력은 짧아지는 결과**
- 한편, 부장 보임에 있어서 <u>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에게 일정한 법관경력을 요구</u> 함으로써 법조경력 요건을 보완하고 있음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기존 법관에 비하여 <u>부장 보임 시기가 1년 지연</u>되어 법조경력 16년 필요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경우 임용 절차 및 연수가 장기화, 실질화되어 임용된 다음 해 정기인사에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에게 부장 보임 전 최소 법관경력 4년을 요구하고 있음
 - 법조경력 11년 이상으로 임용된 법관은 모두 법관으로 4년 근무 후 부장 보임 가



능

● 전문법관 선발, 해외연수 선발 등에서도 일정한 법관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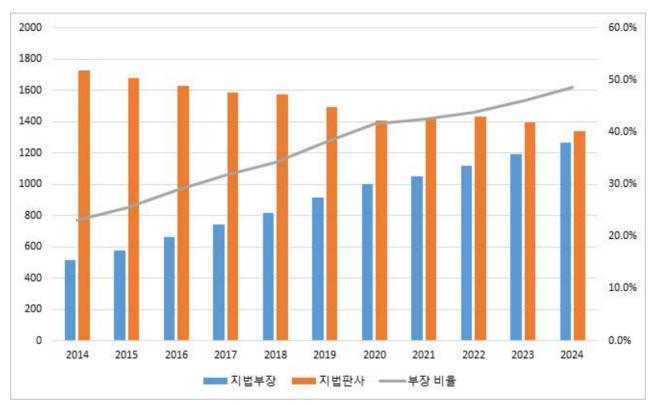
- 현행 인사제도와 같이 법관 임용 전 법조경력을 가급적 법관경력과 동등하게 평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음
 - 동기간의 형평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가까움
 - 변호사 등으로 상당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는 법관으로서도 충분한 능력과 경륜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으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
 - 변호사 등으로 상당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의 법관 지원 유인 증가
- 한편, 부장 보임에 있어서 법관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관경력 중심으로 인
 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각종 인사에서 법조경력을 법관경력에 우선함으로써 <u>법관경력의 중요성이 경시</u> 된다는 지적
 - 가령 11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5년차 법관은 부장 보임 가능한 반면, 5년 법조경력 10년차 법관은 부장 보임 불가 ☞ 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측면에서 전자가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동기간에 기계적 형평을 추구하는 관념은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경향
 - 즉시임용 법관이 대다수였던 시절에는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극히 일부에 불과 하여 동기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 그 불이익이 다소 부각되어 법관 지원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으나,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임용되고 있는 현재 에는 동기간 형평을 유지할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음

2) 부장 보임 시기의 적정성

■ 부장판사 급증 현상

● 지방법원에서의 **부장 인원(명) 비율**²⁰⁾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법 부장	517	573	661	742	817	915	1,003	1,052	1,117	1,191	1,266
지법 판사	1,728	1,676	1,631	1,587	1,572	1,491	1,406	1,425	1,430	1,394	1,342
부장 비율	23.0%	25.5%	28.8%	31.9%	34.2%	38.0%	41.6%	42.5%	43.9%	46.1%	48.5%



- <u>부장 인원 비율이 10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 추세</u>(현재 고법판사를 포함 할 경우 과반을 넘어섬)
- 전체 법관경력 중 부장 근무(년) 비율²¹⁾

²⁰⁾ 매년 정기인사 기준(법원장, 재판연구관 등 제외)

²¹⁾ 편의상 부장으로 15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함. 정년까지 근무함을 가정하면 즉시임용 법관은 약 30세에 법관으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총 35년 근무하고(부장 근무 비율 57.1%), 5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은 약 35세에 법관으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총 30년 근무하므로(부장 근무 비율 66.6%), 실제 부장 근무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임용 구분	지법 판사	지법 부장	부장 근무 비율
즉시	15	15	50.0%
단기	12	15	55.6%
5년 경력	10	15	60.0%
6년 경력	9	15	62.5%
7년 경력	8	15	65.2%
8년 경력	7	15	68.2%
9년 경력	6	15	71.4%
10년 경력	5	15	75.0%
11년 경력	4	15	78.9%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u>부장 근무 비율은 즉시임용 법관에 비해 10.0~28.9%</u> 높음 □ 향후 부장 증가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음

■ 문제점

● 적정한 법관 구성의 관점

- 부장 비율이 과반을 넘어서게 되면 <u>전체 법관 중 부장 비율이 높은 '가분수'</u> 형태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 불가피
 - 법원 조직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인사운영이 다소 경직될 여지
- <u>법관인사에 있어서 부장의 의미가 급격히 퇴색</u> → 향후 부장에 보임되어도 단 독 재판장조차 보임되지 못하고 합의부에서 변형된 배석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 우도 발생 예상
 - 다만, 단독관할의 확대를 통한 1심 단독화 추구, 전원 부장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 판부 확대 등을 통한 심급별 재판역량 강화 등을 고려하면 부장 비율이 높은 인력 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 사법신뢰의 관점

- 부장판사 직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는 여전히 의미가 있음
 - ▶ 지법부장 수의 증가 및 전면적 법조일원화 등 사법제도 변화 흐름에 부응하는 차



원에서 지법부장 직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지법부장 직위를 유지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3) 원활한 인사 운영의 문제

■ 부장 보임 전 수도권 근무기간 부족

- 5년 법조경력자의 <u>부장 보임 직전 수도권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u>하고(수도권 초임 기준), 해외연수, 휴직 등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수도권 근무기간이 1년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u>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취지에 반하는</u> 결과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중 5년 법조경력자의 비중이 크므로 개선의 필요성 높음
- 부장 보임 전 서울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특수법원(행정, 회생 등) 경험이 어렵고, 비재판보직(연구관, 심의관, 교수, 연구위원 등) 보임(통상 법조경력 13~14년차)에도 상당한 부담임

■ 지방권 연속 근무기간의 장기화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즉시임용 법관과 비교할 때 부장 보임 직전 지방권 근무 중인 경우가 증가함 □ 부장 보임 후 계속하여 지방권에 근무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지방권 연속 근무기간이 늘어남
 - 가령, **7년 법조경력**의 수도권 초임은 <u>부장 보임 직전 4년</u>과 <u>부장 보임 직후 3</u> 년 합계 7년간 지방권 연속 근무 필요
 - 5년 법조경력의 수도권 초임도 휴직, 연수 등으로 지방권 근무가 연장되는 경우 비슷한 문제 발생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지방권 근무기간 장기화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u>법조경</u> 력자 임용 법관 다수의 생활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기존 법관과의 형평성을 저



해할 우려

■ 초임별 수도권·지방권 근무기간의 불균형

- 7년 이하 법조경력자의 경우에는 초임별로 수도권·지방권 근무기간에 차이가 없으나, 7년 초과 법조경력자의 경우에는 <u>수도권 초임과 지방권 초임 사이에</u> 수도권·지방권 근무기간의 불균형 발생
- 특히,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의 경우 지방권 초임의 수도권 근무기간은 1년 이 하에 불과한 상황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수도권 근무기간 부족 및 지방권 근무기간 장기화 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우수한 법조경력자 유치에 장애요소 로 작용할 수 있음
- 3.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 개편 방안

가. 개요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법조일 원화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함
 - [방안 ④-1] 부장 보임과 무관하게 단일한 인사패턴을 적용하는 방안
 - [방안 ④-2] 부장 보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 [방안 ④-3] 지방권 근무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 [방안 ④-4] 수도권 최소 2년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
 - [방안 ④-5] 부장 보임 시 전보인사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 나. [방안 4)-1] 부장 보임과 무관하게 단일한 인사패턴을 적용하는 방안

1) 개요

■ 일정한 법조경력이 되면 부장 보임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지방권으로 전보되는 것은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법조경력에 따라 부장 보임 전 인사패턴이 달라지므로 통일적인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 부장 보임 전 수도권 근무 기회가 적어지고 지방권 근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부장 보임 시 지방권 전보를 시행하지 않고 부장 보임과 무관하게 단일한 인사패턴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는 방안 검토
- 상정 가능한 인사패턴에 따라 세부방안 검토
 - [방안 ④-1-ⓐ] 1차 지방권 근무 후 최소 4년의 수도권 근무를 보장하는 인사 패턴

연차 ²²⁾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서울	S	S	S	S	R	R	R	R	K	K	S	S	R	R	R	K	K	K	S
경인	K	K	S	S	R	R	R	R	K	K	S	S	R	R	R	K	K	K	S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R	R	R	K	K	K	S

- 기존 인사패턴을 기초로 하되, 서울권과 지방권 근무의 균형, 사무분담기간의 확보,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지방권 근무를 마친 후 최소 4년의 수도권 근무를 보장하도록 인사패턴을 설정함
 - ▶ 종래 단기법조경력(3년) 법관의 인사패턴과 유사함
- [방안 ④-1-ⓑ] 수도권 초임과 지방권 초임이 교차하여 근무하는 인사패턴

연차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R	R	R	K	K	K	S	S
경인	K	K	S	S	R	R	R	R	S	S	S	R	R	R	K	K	K	S	S
지방	R	R	R	R	K	K	S	S	R	R	R	K	K	K	S	S	S	S	S

- 부장 보임 시 일률적인 지방권 전보가 불필요하므로 수도권 초임과 지방권 초임이 교차하여 근무하는 인사패턴 설정 가능
- 한편, 즉시임용 법관이나 단기법조경력 법관이 포함된 기수는 기존 인사패턴

²²⁾ 법관경력 연차(나,항에서는 같음)

에 비해 불리해지거나 동기간 형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불가

- 43기, 변3회까지는 즉시임용, 단기법조경력, 일반법조경력 법관이 혼재해 있고 이들 사이에는 원칙적인 임용 시점과 부장 보임 시기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 률적으로 새로운 인사패턴을 적용하기 곤란함
- <u>기수 전원이 5년 이상의 일반법조경력으로 임용된 44기, 변4회부터 적용</u>함이 타당함
- 2) [방안 ④-1-@] 1차 지방권 근무 후 최소 4년의 수도권 근무를 보장하는 인사패턴 **개요**
 - 1차 지방권 근무 후 수도권 초임은 4년간, 지방권 초임은 8년간 수도권 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u>기존 인사패턴에 비하여 충분한 수도권 근무기간을 보장</u>하는 방안 ☞ 수도권 근무 중 부장 보임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제자리 보임 가능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향후 부장 보임 및 지방권 전보 예상 인원23)

기수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37	3									
38	23	7								
39	124	23	4							
40		112	17	4						
41			113	41	6					
변1				66	6					
42				95	51	2				
변2					37	5				
43					114	45	2			
변3						50	3			
44							97			
변4							66			
45								57		
변5								86		

²³⁾ 휴직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기수, 임용연도를 고려한 예상이고, 부장 보임 첫해 기수는 음영 표시

46									32	
변6									70	
47										15
변7										48
합계	150	142	134	206	214	102	168	143	102	63

- 기존 인사패턴에 따르면 44기, 변4회는 2031년에, 45기, 변5회는 2032년에 각각 부장 보임 및 지방권 전보 예정이나, 개선방안에 따르면 44기, 변4회는 2031년 부장 보임 후 2033년에, 45기, 변5회는 2032년 부장 보임 후 2034년에 지방권 전보 ➡ 이와 같이 2031년에 44기, 변4회 및 2032년에 45기, 변5회가 각각 부장 보임과 동시에 지방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권에 심각한 결원이 발 생할 우려
 - 특히, 2030년에는 종래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상향의 여파로 부장 보임 및 지방권 전보 대상이 이례적으로 적은 해이므로 그 다음 해부터 지방권 전보 대 상자를 줄이기는 부담스러움
- 다만, 새로운 인사패턴 시행 전부터 <u>지방권 결원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u> 려해 볼 수 있음
 - 2028~2029년에 부장 보임 대상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므로 <u>희망에 따른 부장 보임 유예를 활성화</u>하여 지방권 전보 규모를 분산하는 방안
 - <u>지방권 근무기간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u>하여 전체 지방권 잔류 인원을 늘 리는 방안
 - 44기, 변4회 및 45기, 변5회 법관이 인사패턴에 따라 또는 휴직 등의 사용으로 지 방권에 잔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지방권 근무 지법부장은 659명이고(2024년 정기인사 기준), 지방권 합의 부(항소부 포함) 실질재판부 수는 166.71개로(2023년 기준) 지방권 지법부장 수 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

■ 장·단점 검토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패턴 수립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수도권 근무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초임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 (+) 간명하고 예측가능성 있는 인사운용 가능

- 모든 법관에게 법관경력에 따라 단일한 인사패턴이 적용되므로 인사운용의 관 점에서 간명하면서 예측가능성 강화

● (-) 향후 지방권에 결원 발생 예상

- 이행기 동안 2031년에 **44기, 변4회(합계 163명)**, 2032년에 **45기, 변5회(합계 143** 명)의 지방권 미전보에 따른 결원 발생
 - □ 다만, 인사패턴에 따라 또는 휴직 등의 사용으로 지방권에 근무 중인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수도권 근무기간이 고정적으로 보장되면서 장기적으로 지방권 근무 자원이 감소할 수 있음
 - 현재에는 휴직, 연수 등으로 수도권 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부장 보임과 동시에 지방권에 전보됨으로써 수도권 근무기간이 고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 (-)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을 허용함에 따른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

- 현재에는 부장 보임과 동시에 지방권 전보를 시행함으로써 지방권 근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직유인도 방지하는 효과 ☞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을 허용하는 경우 추후 <u>지방권 전보 시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직유인이 증가</u> 할 우려 있음



- 지방권에서 일정 기간 잔류하거나 휴직 등을 사용한 후 <u>부장 보임 시기에 맞추어 수도권에 진입</u>함으로써 부장 보임 시의 권역을 사실상 선택할 수 있음 ☞ '수도권 부장판사'에 대한 외부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에 활용되는 등부작용 소지 있음

○ (-) 지법부장에 대한 권역별 인사운용에 차질 우려

- 상당수의 법관이 수도권에서 초임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u>수도권 재판역</u> <u>량 저하</u> 가능성
 - 한편, 그동안 <u>비부장이 담당했던 단독재판을 초임 부장이 담당하고 주요 합의부 재</u> <u>판장은 조금 더 높은 연차의 부장이 담당</u>함으로써 오히려 재판역량이 제고될 여지 가 있다는 시각도 있음
- 휴직, 연수 등으로 인사패턴에 따른 이동이 지연되어 <u>재판장으로 충분한 경력</u> 을 쌓은 시기에 지방권 또는 경인권에 근무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짐
- (-) <u>부장 보임과 인사패턴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무분담기간 확보 곤란</u>한 경우 발생
 - 권역 내 근무기간 도중 <u>부장 보임으로 재판부가 변경되었다가 1~2년 후 인사패</u> 턴에 따라 타 권역으로 전보되는 경우 사무분담기간 확보 불가
 - 다만, 부장 보임 직전 대부분 단독재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장 보임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검토의견 ▷ 소극

	권역별	업무의	법관 생활의	법관 사이의	적정한
	인력수급	효율성·연속성	안정	형평	인사운 용 등
장점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단기 전 보 방지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충분한 수도권 근무기간 확보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 상 불이익 해소	·간명하고 예측가 능성 있음



단점	·이행기 동안에 지방권에 대거 결원 발생 예상	·부장 보임과 인사 패턴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무분담 기간 확보 곤란한 경우 발생		보임을 허용함으 로써 과도한 혜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을 허용함에 따른 여러 부작 용 발생 우려
검토	•	宁	宁	_	•

- 지방권 결원 발생 및 사직유인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3) [방안 ④-1-ⓑ] 수도권 초임과 지방권 초임이 교차하여 근무하는 인사패턴

■ 개요

- 수도권 초임과 지방권 초임이 교차하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제자리 부장 보임 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하고 지방권 근무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 초임별 수도권·지방권 근무기간의 균형을 위해 <u>법관경력 9년차부터 권역별 3</u> 년 근무로 설정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u>지방권 초임의 조기 2차 지방권 근무</u>를 통해 이행기 동안의 지방권 결원 최소 화 가능
 - 즉, 이행기인 2031년에 44기, 변4회(163명)의 지방권 미전보에 따른 결원 요소가 있으나, 한편으로 44기, 변4회 지방권 초임은 2029년부터, 45기, 변5회 지방권 초임은 2030년부터, 46기, 변6회 지방권 초임은 2031년부터 각각 2차 지방권 근무를 시작하므로 지방권 결원이 상쇄될 수 있음

■ 장·단점 검토

- (+) 이행기 동안의 지방권 결원 발생 최소화 가능
 - 이행기 동안 지방권 인력수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사정은 시행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임



● (-) 지방권 초임 법관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될 필요

- 지방권 초임인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으로서는 예상보다 조기에 2차 지방권 근 무를 실시함으로써 부장 보임 직전 수도권 근무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함
 - □ 다만, 5년 법조경력자를 기준으로 지방권 초임은 부장 보임 직후 수도권에서 근무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장점도 있음

○ (-)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을 허용함에 따른 여러 부작용 우려 여전함

- 사직유인 증가, 적정한 인사운용 지장 등의 문제 소지 상존

● (-) 사무분담기간 확보 곤란한 경우 발생

- 가령, 5년 법조경력자의 경우 법관 11년차에 부장 보임되어 1년 근무 후 12년 차에 타 권역 전보
 - ▶ 부장 보임 시기를 1년 지연하는 방안과 결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검토의견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 용 등
장점	·지방권초임의조기2차지방권근무를통해지방권근무자원확보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단기 전 보 방지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일정한 수도권 근무기간 확보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인사패턴 상 불이익 해소	·간명하고 예측가 능성 있음
단점	·부장 보임 시 지 방권 미전보에 따른 결원 요소 여전	·부장 보임과 인사 패턴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무분담 기간 확보 곤란한 경우 발생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을 허용함으 로써 과도한 혜 택으로 볼 여지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을 허용함에 따른 여러 부작 용 발생 우려
검토	_	宁	宁	_	•

●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을 허용함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



지 새로운 인사패턴을 시행할 만한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방안 ④-2] 부장 보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1) 개요

-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부장 증가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부장 보임 시기를 조정하여 적정한 법관 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부장 보임 전 수도권 근무 기회를 확보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음
- 법관 임용 전 법조경력과 법관경력을 가급적 동등하게 취급하는 관점에서 부장 보임 시기를 일률적으로 지연하는 방안과, 법관경력 요건의 강화 필요 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부장 보임에 일정한 법관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함
 - [방안 ④-1-ⓐ] 부장 보임 시기를 일률적으로 지연하는 방안
 - [방안 ④-1-ⓑ] 부장 보임에 일정한 법관경력을 요구하는 방안
- 2) [방안 ④-2-@] 부장 보임 시기를 일률적으로 지연하는 방안

■ 개요

- 최소한의 근무기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2년** 지연하는 방안으로 검토(법조경력 19년차에 부장 보임)
- 동기간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기수 <u>전원이 5년 이상의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44</u> 기, 변4회부터 부장 보임 기수 지연 가능
- 5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서울	S	S	S	S	R	R	R	R	K	K	K	S	Р
경인	K	K	S	S	R	R	R	R	K	K	K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S	S	Р

● 7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서울											
경인	K	K	S	S	R	R	R	R	K	K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Р

● 10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12	13	14	15	16	17	18	19
서울	S	S	S	S	R	R	R	Р
경인	K	K	S	S	R	R	R	Р
지방	R	R	R	R	K	K	K	Р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인사패턴에 따르면 44기, 변4회는 2031년에, 45기, 변5회는 2032년에 각각 부장 보임 및 지방권 전보 예정이나, 개선방안에 따르면 44기, 변4회는 2033년 에, 45기, 변5회는 2034년에 각각 부장 보임 및 지방권 전보됨으로써 <u>이행기인</u> 2031~2032년에 지방권에 심각한 결원 발생 우려
 - 지방권 결원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방안 ④-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음

■ 장·단점 검토

● (+) 법조일원화 시행 및 부장 급증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시의 적절한 방안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종래에 비하여 법관경력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으로 보임되므로 점차 전체 법관 중 부장 비율이 증가하여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 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 🖙 적정한 법관 구성 저해
- 부장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u>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유지되기</u> 어려울 수 있음
- (+) <u>수도권 단기 근무 방지</u>(주로 5~6년 법조경력 수도권 초임의 경우)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추세에



도 부합

- (+) 특수법원, 비재판보직 등의 보임 시기 확보(주로 5년 법조경력 수도권 초임 의 경우)
 - 최소 4년 이상의 수도권 근무기간이 확보됨으로써 특수법원, 비재판보직 등의 보임에 용이
 - □ 다만, 특수법원 보임을 위해서는 수도권 4년 중 서울권 최소 2년 근무가 보장되어○야 하고 회생 근무기간 3년 원칙의 조정 등이 필요함
- (+) 초임별 근무지의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 가능
 - 부장 보임 전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초임별 수도권·지방권 근무기간 차이 감소
-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음
 - <u>부장 보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u>할 때 부장 보임 시기의 지연은 불이익 부 과로 인식되어 법관 지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 법관 임용 전 법조경력을 법관경력과 동등하게 취급함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부장 보임 시기를 늦춤으로써 <u>비교적 경력이 적은 법조경력자 입장에서 법</u>원에 지원할 동기가 감소할 수 있음
- (-) 이행기 동안에 지방권에 대거 결원 발생 예상
 - 2031년에 **44기, 변4회(합계 163명)**, 2032년에 **45기, 변5회(합계 143명)**의 각 부장 미보임에 따른 결원 발생
 - 결원을 감행하는 경우 다른 기수의 불이익 예상
- (-) 법조경력 19년차의 지법부장 보임은 현행 대법관 자격 요건(법조경력 20년),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요건(법조경력 20년 + 고등법원 근무경력 3년) 등을 고려할 때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가능
 - ▶ 검찰에 비해 부장 보임 기수가 지나치게 지연된다고 볼 수도 있음



■ 검토의견 ▷ 한정 적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 용 등
장점		·수도권 단기 근 무 방지	·수도권 단기 근 무 방지	·법조경력임용법관의특수법원,비재판보직등 보임 가능·초임별근무지불균형일부나마해소	·법조일원화 시행 및 부장 급증 현 상 고려하였을 때 시의 적절
단점	·지방권에 대거 결원 발생 예상	·8년 법조경력자 등은 수도권 단 기 근무 가능성	·8년 법조경력자 등은 수도권 단 기 근무 가능성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에게 불이익 으로 인식될 우 려	
검토	1		宁	Û	1

- 부장 보임 시기의 지연은 부장 급증 현상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음
- 다만,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입장에서 불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면밀한 의견수렴과 법관 지원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행기 동안의 지방권 결원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임
 - 부장 보임 1년 지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 가능
- 3) [방안 ④-2-⑥] 부장 보임에 일정한 법관경력을 요구하는 방안

■ 개요

- <u>부장 보임을 위한 법관경력 요건을 강화</u>하여 현재의 4년 요건을 연장하는 방안
- 수도권·지방권 근무기간 사이 최소한의 균형을 고려할 때 **법관경력 6년, 8년,** 10년을 요구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함

- 법관경력 6년 요구 방안 □ 법조경력 9년 이상은 부장 보임을 위한 근무기간 동일
 - ▶ 9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R	R	Р
경인	K	K	S	S	R	R	Р
지방	R	R	R	R	K	K	Р

▶ 11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13	14	15	16	17	18	19
서울	S	S	S	S	R	R	Р
경인	K	K	S	S	R	R	Р
지방	R	R	R	R	K	K	Р

- **법관경력 8년** 요구 방안 ▷ <u>법조경력 7년 이상은 부장 보임을 위한 근무기간</u> 동일
 - ▶ 7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R	R	R	R	Р
경인	K	K	S	S	R	R	R	R	Р
지방	R	R	R	R	K	K	K	S	Р

▶ 11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13	14	15	16	17	18	19	20	21
서울	S	S	S	S	R	R	R	R	Р
경인	K	K	S	S	R	R	R	R	Р
지방	R	R	R	R	K	K	K	S	Р

- 법관경력 10년 요구 방안 ▷ 모든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부장 보임을 위한 근무기간 동일
 - ▶ 5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	R	R	R	R	K	K	Р
		K									
지방	R	R	R	R	K	K	K	S	S	S	Р

▶ 11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서울	S	S	S	S	R	R	R	R	K	K	Р
경인	K	K	S	S	R	R	R	R	K	K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Р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인사패턴과 비교할 때 수도권 근무와 지방권 근무가 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수급 불균형 우려 크지 않음

■ 장·단점 검토

- (+) 법관경력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함이 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측면에** 서 바람직하고 또 간명함
- (+) 부장 보임 전 근무기간이 일정하게 확보됨에 따라 <u>경력 또는 초임지에 따</u> 른 불균형을 일부 해소
- (-) 법조경력과 무관하게 장기간의 법관경력을 요구함으로써 동기간에도 임용 연도에 따라 부장 보임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 조인의 법관 지원에 부정적 영향
- (-) 법조경력에 따라 선발 또는 보임 자격이 주어지는 각종 연수, 선발성 보직 등의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
 - 다만, 전문법관 선발, 해외연수 선발 등 일정한 법관경력을 요구하는 인사 영역 이 이미 존재함

■ 검토의견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 용 등
장점	·수도권 근무와 지방권 근무가 고르게 늘어남		·지방권 초임의 수도권 근무기간 확보	·경력 또는 초임 지에 따른 불균 형을 일부 해소	·임용연도에 따라 하나의 인사패턴 이 적용되므로 간명한 인사운용 가능
단점			·수도권 초임의 지방권 근무기간 장기화	·동기간에도 임용 연도에 따라 부 장 보임 시기에 상당한 차이 발 생	·해외연수, 각종 선발성 보직 등 의 체계와 맞지 않음
검토	-	_	-	1	宁

- 2016년 정기인사에서 기수별로 부장 보임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최소 4년에 서 최대 8년까지 상향하기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2019년 정기인사에서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최소 법관경력을 4년으로 통일하도록 정책결정이다시 이루어진 바 있음
- 기존 즉시임용 법관에 비하여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부장 보임이 1년 지연되고 있음 ☞ 추가 법관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11년 이상 법조경력자는 동기에 비해 2년(법관경력 6년 요구 방안) 또는 4년(법관경력 8년 요구 방안) 또는 6년(법관경력 10년 요구 방안) 부장 보임이 늦어지게 됨
- 부장 보임이 늦어지는 6~10년 동안 배석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면 중견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큼

라. [방안 ④-3] 지방권 근무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 개요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중 수도권 초임의 부장 보임 전 수도권 근무기간이 짧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초임 법관의 지방권 근무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추후 부장 보임 전 수도권 근무기간을 확보하는 방안

- 재판장 아닌 법관의 사무분담기간을 고려하여 2년 앞당기는 방안 검토
- 인사패턴을 고려할 때 5~7년 법조경력자에 한하여 시행 가능
 - ▶ 5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서울											
경인	K	K	R	R	R	R	K	K	K	S	Р
지방	R	R	R	R	K	K	K	S	S	S	Р

▶ 6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R				K	Р
경인	K	K	R	R	R	R	K	K	K	Р
지방	R	R	R	R	K	K	K	S	S	Р

• 7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연차 초임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R	R	R	R	K	K	Р
경인	K	K	R	R	R	R	K	K	Р
지방	R	R	R	R	K	K	K	S	Р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연도별 지방권 전보 예상 인원(5~7년 법조경력자 중 수도권 초임)²⁴⁾

기수	2025	2026	2027	2028
42	3			
변2	2			
43	1	4		
변3	3			
44	30	7	10	
변4	14	7	4	5
45		26	5	3

24) 휴직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기수, 임용연도를 고려한 예상임



변5		27	9	4
46			24	2
변6			25	20
47				14
변7				39
합계	53	71	77	87

- 즉시 시행하는 경우 2027년 지방권 전보 예정인 44기~46기(변4회~변6회) 77명 이 2025년에 지방권 전보됨으로써 당장은 서울권 과원 해소 및 지방권 공석 충 원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4년 후인 2029년에 해당 인원이 추가로 경인권 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지방권에 결원 우려가 있음
- <u>수도권에 법관경력 3~4년차 법관의 공백</u>이 발생하므로 배석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관경력 3년차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지방권 전보 시 중·소규모 지원에 배치하기 곤란함 ☞ 중·소규모 지원 공석 상당수가 부장으로 충원됨이 불가피함

■ 장·단점 검토

- (+) 부장 보임 시기를 유지하면서도 <u>부장 보임 전 수도권 근무기간을 최대한</u>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
 - 부장 보임 전 특수법원, 비재판보직 등의 보임 용이
- (+) 초임 시절 수도권 2년의 단기 근무가 중견 법관의 단기 근무에 비하여 수
 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음
- (-) 이행기 동안에 <u>지방권에 상당한 결원 발생</u> 예상
 - 수도권의 배석자원 부족, 지방권의 단독자원 부족 등 원활한 인력수급에 대한 우려 있음
- (-) 수도권 초임도 단기 근무 후 지방권으로 전보된다는 사정은 <u>법관 임용 지</u>원 유인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검토의견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 용 등
장점			·부장 보임 전 수 도권 근무기간 확보	·부장 보임 전 특 수법원, 비재판 보직 등 보임 용 이	·부장 보임 시기 유지
단점	·이행기 동안에 지방권에 상당한 결원 발생 우려		·수도권 초임도 단기 근무 후 지 방권으로 전보		·수도권에 법관경력 3~4년차 공백·중·소규모 지원부장으로 충원불가피
검토	•	_	_	_	Ţ

- 권역별 원활한 인력수급 및 적절한 재판부 구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반면, 해당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이 체감할 장점도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움

마. [방안 ④-4] 수도권 최소 2년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

1) 개요

- <u>지방권 초임에 대하여 수도권에서 최소 2년 근무를 보장</u>함으로써 초임별 수도 권·지방권 근무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 지방권 초임의 지방권 근무기간 중 일부를 수도권 근무로 변경하되, 수도권 초임의 수도권 근무기간 중 일부를 지방권 근무로 변경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대비 필요



법조경력 9년까지는 지방권 초임의 수도권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법조경
 력 10년 이상부터 검토

2) [방안 ④-4-@] 10년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 개요

연차 초임	12	13	14	15	16	17
서울	S	S	S	S→R	R	Р
경인	K	K	S→K	S→R	R	Р
지방	R	R	R	R→K	K	Р

수도권 초임: 수도권 4년→3년, 지방권 1년→2년

지방권 초임: 수도권 1년→2년, 지방권 4년→3년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10년 법조경력자의 수도권·지방권 배치 비율에 따라 인력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음
- 다만, 경인권 과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권 초임의 수도권 근무 시 경인권과 함께 서울권에도 배치 필요

■ 장·단점 검토

- (+)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권 초임 법관의 생활 안정성 제고
- (+) 부장 보임 직전 2년 근무를 보장하면서 배석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 확보
- (+) 기존의 인사패턴과 부장 보임 시기 등을 기초로 하므로 <u>시행에 부담이 적</u> 음
- (-) 수도권 초임은 지방권 근무기간 연장으로 생활 안정성 저하 ☞ 일부나마 법관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 경인권 초임의 경우 서울권 근무기회가 상실됨
- (-) 초임지에서 3년 근무하는 경우 사무분담기간 2+1 예상되므로 배석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 준수 불가

■ 검토의견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 용 등
장점		.부장보임직전2년근무를보장하여배석으로서의사무분담기간확보	·지방권 초임 법 관의 생활 안정 성 제고	·초임에 관계없이 수도권 2년 근 무 보장	·기존의 인사패턴 과 부장 보임 시 기 등을 기초로 함
단점	·10년 법조경력 자의 규모가 크 지 않음	·초임지 3년 근 무로 배석으로서 의 사무분담기간 준수 불가	·수도권 초임 법 관의 생활 안정 성 저하	·경인권 초임의 서울권 근무기회 상실	·수도권 초임이라 도 3년 만에 지 방권에 전보됨으 로써 법관 지원 에 부정적 영향 우려
검토	-	_	_	-	_

- 1년 이하의 단기 전보를 방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 가능한 측면
 - ▶ [방안 ①-4-ⓑ] 지법판사의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제외하는 방안 등
- 다만, <u>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나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생활 안정성에 기여하</u> 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방안 ④-4-⑥] 11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

■ 개요

연차 초임	13	14	15	16	17
서울	S	S	S→R	S→R	Р
경인	K	K	S→R	S→R	Р
지방	R	R	R→K	R→K	Р

수도권 초임: 수도권 4년→2년, 지방권 0년→2년



지방권 초임: 수도권 0년→2년, 지방권 4년→2년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11년 이상 법조경력자의 수도권·지방권 배치 비율에 따라 인력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음
- 지방권 초임의 수도권 근무 시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서울권과 경인권에 유연 하게 배치 가능

■ 장·단점 검토

- (+)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권 초임 법관의 생활 안정성 제고
-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들이 부장 보임 전 여러 권역에서 근무하면서 <u>다양한</u> 업무 경험 가능
- (-) **수도권 초임**은 지방권 전보로 생활 안정성 저하
- (-) 경인권 초임의 경우 서울권 근무기회가 상실됨
- (-) 전보인사의 빈도가 늘어나므로 <u>전보주기 장기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측</u> 면

■ 검토의견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 용 등
장점			·지방권 초임 법 관의 생활 안정 성 제고	·초임에 관계없이 수도권 2년 근 무 보장	
단점	·10년 법조경력 자의 규모가 크 지 않음		·수도권 초임 법관의 생활 안정성 저하·2년마다 전보되므로 생활 안정에 한계	·경인권 초임의 서울권 근무기회 상실	·수도권 초임이라 도 2년 만에 지 방권에 전보됨으 로써 법관 지원 에 부정적 영향 우려



검토	-	-	Û	宁	Û

- 수도권 초임이라도 2년 만에 지방권에 전보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법관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방권 초임의 경우에도 단기간 수도권 근무 후 부장 보임과 함께 다시 지방권으로 전보되므로 생활 안정성 강화에 의문
- 전보주기 장기화 추세에 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바. [방안 ④-5] 부장 보임 시 전보인시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1) 개요

- 부장 보임 시 일률적으로 지방권에 전보되면서 <u>부장 보임 전후로 지방권에 장기간 근무하거나 수도권에 단기간 근무 후 지방권에 전보</u>되는 경우가 발생 ☞ 부장 보임 시 전보인사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지방권 근무 장기화 또는 불**필요한 단기 전보를 방지하는 방안 검토
 - [방안 4)-4-(a)]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경인권 전보를 허용하는 방안
 - [방안 ④-4-ⓑ]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전보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2) 종래 부장 보임 시 전보인사 기준

-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 시 지방권으로 전보함이 원칙
 - <u>예외적으로 장기근무법관의 장기근무</u> 중 부장 보임 시기가 도래할 경우 부장 보임 최대 3년 유예
 - 종래에는 부장 보임 불희망 시 2년까지는 가급적 허용하였으나 2020년부터 불 허 방침
-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고등법원 권역 외로 전보함이 원칙
 - 종래 인사패턴 상으로는 부장 보임 시 서울권에 근무함이 일반적이므로 부장



보임 시 지방권에 근무하는 경우 지역계속근무법관으로 볼 수 있음 □ 부장 보임 시 권역 외 전보

- 11년 이상 법조경력 지방권 초임의 경우에도 4년 근무 후 부장 보임 시 권역 외 전보가 실시되어 왔음
- 예외적으로 장기근무법관의 장기근무 중 부장 보임 시기가 도래할 경우 부장 보임 최대 2년 유예

3) [방안 ④-5-@]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경인권 전보를 허용하는 방안

■ 개요

-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u>희망에 따라 지방권 근무를 유예하고 경인권 전보를</u> 허용함으로써 지방권 장기근무를 방지하는 방안
- 지방권 장기근무를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u>부장 보임 전 지방권 실근무를 3년 이</u>
 상 마친 경우에 한하여 경인권 전보를 허용하고 <u>경인권 근무 후 다시 유예된</u>
 지방권 근무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지방권 근무를 서울권 근무 이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지방 권 인력수급에 악영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유예된 지방권 근무를 실시할 때 사 직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지 않음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 한편으로, 경인권 인력충원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장·단점 검토

• (+) <u>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지방권 장기근무를 방지</u>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 강화



- 부장 보임 전 인사패턴에 따라 지방권에 근무하는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경 우 부장 보임 후에도 지방권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지방권 근무가 지나치게 장 기화됨
- (-)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만 허용함이 불가피 □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 한편으로, <u>경인권 근무 후 다시 지방권으로 전보</u>되므로 법조경력자 임용 법 관의 생활 안정성에 대한 기여 정도는 미지수

■ 검토의견 ▷ 소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용 등
장점			·법조경력임용법관의지방권장기근무방지		
단점	·부장 보임 시 지 방권 근무 자원 이 경인권에 전 보		·경인권 근무 후 다시 지방권으로 전보되므로 생활 안정에 한계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만 허용함이 불가피	·경인권 근무 후 유예된 지방권 근무 전 사직유 인 있음
검토	Û	-	宁	Û	-

● <u>지방권 인력수급에 지장 소지와 일부만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u> 및 <u>유예된 지방권 근무 전 사직유인</u>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는 반면,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생활 안정성 강화 정도는 미지수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방안 ④-5-ⓑ]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전보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 개요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이 <u>인사패턴에 따라 지방권 근무 중 부장 보임 시기가 도</u> 대한 경우 권역 외 전보를 유예함으로써 희망하지 않는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 장기근무법관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u>2년 이내 실근무 후 부장 보임 시 전</u>보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우선 검토(최대 5년 근무)
 - 현재 인사패턴 상 9~10년 법조경력자가 이에 해당
 - 1~2년 단기 근무 후 타 법원으로 전보될 경우 장기화된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
- 종래에는 부장 보임 무렵 지방권 근무 중인 경우 지역계속근무법관으로 볼 수 있어 부장 보임 시 권역 외 전보가 적절하였음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이 인사패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권 근무 중인 경우에는 부장 보임 시 권역 외전보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지방권 내 전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권역별 인력수급 문제와는 무관함
- 다만, 선호지역에서 전보 유예자가 많을 경우 해당 지역의 인력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 장·단점 검토

-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지방권 근무 중 불이익 해소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이 인사패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권 근무 중임에도 <u>부</u> 장 보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타 법원으로 전보함은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음
- (+) <u>기존 인사패턴과 부장 보임 시기 등을 기초</u>로 하므로 시행이 비교적 용이함
- (-) 선호지역에서 전보 유예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u>선호지</u> 역 공석 감소 및 형평성 문제제기 우려
 - 지법판사의 지방권 전보 시 근무지는 임관성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부장



보임 시 근무지는 그동안의 임지, 해외연수 및 선발성 보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짐 ⇨ 지방권 전보 시 선호지역에 전보된 경우 부장 보임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검토의견 ▷ 적극

	권역별 인력수급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적정한 인사운 용 등
장점		·법조경력임용법관의부장보임시단기전보방지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부장 보 임 시 단기 전보 방지	·법조경력 임용 법관의 불이익 개선	·기존 인사패턴과 부장 보임 시기 등을 기초로 함
단점	·선호지역에서 전보 유예자가 많을 경우 해 당 지역의 인 력수급에 지장			·선호지역의 공석 감소 및 형평성 문제제기 우려	
검토	-	Û		-	_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불이익 개선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
 -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우려는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적정한 운용을 통하여 해소 노력 필요
- 나아가,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이 인사패턴에 따라 지방권에 2년 초과 실근무후 부장 보임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전보 유예는 불가하나 권역 내 전보는 궁정 적으로 고려 가능



V.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 1. 일시 및 장소
 - 2024. 9. 23.(월) 14:00 ~ 18:00
 - 대법원 본관 406호 회의실

2. 회의 요지

■ 법관 전보인사의 개선 방향

-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법관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 주기를 장기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관하여, 법관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하여 법관의 전보인사를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한편,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일선 법관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정된 사무분담 예규는 예외 규정을 활용하 여 유연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나 법관 전보인사의 개편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므 로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전보인사 주기 장기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무분담기간 확보의 측면에 국한되기보다는 법관의 독립을 강화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법관 전보인사의 주기 개편 및 유연화 방안

① 권역 내 순환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 [세부방안 ①] 본안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3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의 서울권 내 시내법원 간의 전보를 없애고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법원 3



년, 시내법원 4년 근무 원칙으로 변경하는 방안(b)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였음

- 반면, 원칙적인 근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재판장으로 3년 근무 후 다른 재판부에서 불과 1년만 근무하고 전보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무분담기간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그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근무를희망하지 않는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될 수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인 지법부장들의 부정적 반응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순환근무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근무기간을 4년으로 정하면 소액사건, 정식재판청구사 건, 영장사건 등 사무분담기간이 1년인 사무분담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재 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울권 내 전보인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 음
- 순환근무 축소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4년간 근무하는 시내법원의 선호도 등에 따른 형평을 이후 지방권 전보 시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고, 시행 시기에 관하여는 2025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하되 현재 가정법원이나 시내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③안)에 전원이 찬성하였음
- [세부방안 ②, ③] 초임 지법판사의 순환근무를 폐지하거나 수도권 초임 지법판사의 지방권 본・지원 교류 등을 폐지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재판장 아닌 법관의 사무분담기간(2년)을 고려할 때 전보인사 주기 장기화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전원이 순환근무 폐지에 반대하였음
- [세부방안 ④] 지법판사의 지법부장 보임 전 서울권 내 원칙적인 근무기간을 2 년에서 3년으로 장기화하여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방안(ⓐ안)에 관하여는, 현재



지방권 근무를 마친 지법판사의 서울권 전체 근무기간이 5년 이하에 불과하여 전보인사 주기를 개편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원이 순환근무 축소에 반대하였음

- 지법부장 보임 1년 전에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⑥안)에 관하여는, 1년의 단기근무 예정인 법관에 대하여 적절한 사무분담이 곤란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 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 한편, 경인권에서 서울권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등 개별 법관의 상황에 따라 1 년이라도 주거지에 가까운 법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고, 특히 전보가 불허되어 선호도 낮은 사무분담을 연이어 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관의 입 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도 있었음
 - 시행 범위와 관련하여 서울권 내에서만 시행하고 경인권에서 서울권으로의 전 보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행 시기에 관하여는 내년 정기인사에서 당장 전보를 기대하고 있는 법관의 신뢰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세부방안 ⑤] 지역계속근무법관의 원칙적인 본원 근무기간을 3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지원 근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지원 근무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역계속근무법관의 부정적 반응이 예상되고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계속근무법관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원이 순환근무 축소에 반대하였음

[2] 전보인사를 사무분담기간과 연계하는 방안

● 사무분담기간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하여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 권역 내·



외의 전보인사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원이 반대하였고, 그 논거 로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형사 재판부 등 비선호보직 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사무 분담기간의 실질화는 법관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
- 일부 법관에 한하여 전보인사 유예를 허용할 경우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고 법 관 사이에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도 잔류희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새로운 제도로서 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

③ 권역별 근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 [세부방안 ①] 본안 재판장으로서의 사무분담기간을 고려하여 지법부장의 서울 권 근무기간을 7년에서 6년(3년+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②)에 대하여는 장기재 직 지법부장의 처우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 한편, 종래에는 지법부장의 시내지법 근무단위가 2년임을 고려하여 서울권 전체 근무기간이 7년(중앙 3년 + 시내 2년 + 시내 2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과 전보주기를 고려할 때 7년보다 6년이 적절할 수 있고 뒤에서 논의하는 부장 보임 시기 지연에 따른 지방권 인력부족을 대비하는 방안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울권 근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음
- [세부방안 ②] 지법부장의 서울권 근무기간을 7년에서 9년(3년+3년+3년)으로 연 장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지방권 인력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 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의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 개편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법관경력과 법관경력이 아닌 법조경력을 어떻게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동기간의 기계적 형평을 추구하는 관념은 희석되어 가고 있으므로, 동기라도 법관 임용 시기가 다르다면 인사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고 먼저 임용된 법관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관 지원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
- 조기에 부장으로 보임됨으로써 전체 법관 중 부장 비율이 높은 '가분수' 형 태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세부방안 ①] 부장 보임과 무관하게 단일한 인사패턴 적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수도권에서 부장 보임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권 전보 시 사직유인이 증가할 우려가 상당하고, 부장 보임 시기에 맞추어 수도권에 진입함으로써 부장 보임 권역을 사실상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으며, 수도권 내 부장 기수가 낮아져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역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는 의견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직유인을 비롯하여 법관 사회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 부장 보임 무렵은 법관들이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시기로서 법조경력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변호사 경험이 있기도 하므로 사직유 인 증가 가능성은 기우일 수 있다는 의견
- [세부방안 ②] 부장 보임 시기를 일률적으로 1~2년 늦추는 방안(②안)에 관하여 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긍정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은 종래에 비하여 법관경력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으

로 보임되므로 점차 전체 법관 중 부장 비율이 증가하여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 구조가 심화될 수 있고, 부장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장 보임 시기를 현행보다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법관들에게 법관 구성 현황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는 의견
- 부정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부장 보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장 보임 전 수도권 근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장 보임 시기를 늦춘다는 접근 방식은 법관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부장 보임 시기의 지연으로 배석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와 법관 지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 일률적으로 부장 보임 시기를 늦추는 경우 비교적 경력이 적은 법조경력자 입 장에서 법원에 지원할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
- 법조경력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강력한 명분 이 있지 않다면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부장 보임에 법관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 견들이 제시되었음
 - 긍정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부장 보임을 위한 최소 법관경력을 현재의 4년보다 상향하게 되면 법조경력자들이 조기에 법원에 지원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
 - 법원 외부의 시각에서 동기라도 법관 임용 시기에 따라 부장 보임에 있어서 차 등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의견
 - · 법관임용제도가 법조경력 5년 이상과 10년 이상 등 '투 트랙'으로 정착되는 경우 10년 이상으로 임용된 법관에게는 현재보다 장기간의 법관경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 부정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부장 보임에 있어서 동기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 경력이 많은 법조경력자 입장에서 법원에 지원할 동기가 감소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 순혈주의가 강화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
- [세부방안 ③] 수도권 초임 법관의 지방권 근무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원활한 권역별 인력수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 [세부방안 ④] 법조경력 9년 이상으로 임용된 법관에 대하여 최소 2년의 수도 권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은 사무분담 장기화나 생활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음
- [세부방안 ⑤]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경인권 전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권 인력수급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원이 반대하였음
- 지방권에서 부장 보임 시 전보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권에 서 단기간 근무한 후 부장으로 보임된 경우에는 선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전원이 찬성하였음



법관 전보인사 제도에 관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

1. 지향점

-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법관이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법관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하여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함이 바람직함